

연구용역 보고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현황과 모범사례 분석

조흥학·박민수·김태구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 출 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현황과 모범사례 분석”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연구진

연구기관 :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조흥학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연구원 : 박민수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연구원 : 김태구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요약문

- 연구기간 2023년 08월 ~ 2023년 11월
- 핵심단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활동시간, 적정인력, 교육
- Highlights 전체 사업장(130,348명, 0.65%)에 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 되어 있는 사업장(7,523명, 0.84%)의 재해자수가 확연하게 적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시간의 보장, 적정 인력 확보, 업무 지원 방안, 전문화 교육 등의 제도적·정책적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1. 연구배경

- 2023년 로드맵에 따라 노·사참여에 필요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장의 능동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부의 지도·감독 등에 의한 수동적 안전관리 활동보다는 사업장 내 안전문화 저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 위험요인을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활용방안이 대두됨.
- 이에 따라 사업장 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량 및 직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 작동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운영실태 현황분석 및 모범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2. 주요연구내용

1) 연구결과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현황

- 고용노동부의 2023년 9월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는 총 2,329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전임은 8.84%(206명), 비전임 91.16%(2,123명)로 조사되었다. 비전임만의 직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사원”이 41.7%(97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평조합원” 23.1%(539명), “과장급이상 간부사원” 17.3%(403명), “산업안전보건부서장 및 간부” 8.97%(209명) 순으로 나타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황을 청별로 살펴보면, 부산청이 25.2%(588명)로 가장 많고, 중부청 22.2%(516명), 대전청 18.6%(434명), 광주청 13.1%(306명), 대구청 12.3%(287명), 서울청 8.5%(198명) 순으로 나타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재해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1항1호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해야 하는 업종별·규모별 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장,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을 살펴봄. 전체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 현황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2022년 기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율(0.84%)이 전체 사업장의 재해율(0.65%)에 비하여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적게 분포되어 있어 재해율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또한 업종별로 살펴본 결과,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율이 전체 사업장의 재해율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실태 조사

-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2023년 9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응답자 341명 중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32명을 대상으로 Google Forms를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제조업 222명(66.8%), 서비스업 47명(14.2%), 기타업종 47명(14.2%), 건설업 16명(4.8%)으로 제조업(222명, 66.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규모별(상시 근로자수)로 살펴본 결과, 100~299인 128명(38.5%), 300~999인 89명(26.8%)으로 분석됨.
-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153명(46.1%), 40대 128명(38.6%)으로 조사되어 50대와 40대가 281명(84.6%)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속기간으로는 “15년 이상”이 223명(6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된 응답자의 직위는 노조원 52명(15.7%), 노조간부 167명(50.3%), 일반근로자 113명(34.0%)으로 나타났으며 “노조간부” 167명(50.3%)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응답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된 기간에 관해 “2년 이내” 153명(46.1%), “2~4년 이내” 73명(22.0%), “8년 초과” 45명(13.6%), “4~6년 이내” 40명(12.0%), “6~8년 이내” 21명(6.3%) 순으로 조사됨.
- 사업장 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1명만 위촉(282명, 85.0%)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인원의 바람직한 기준에 대하여 “사업장의 공정 종류와 특성에 따라” (123명, 37.1%), “근로자의

수에 따라”(112명, 33.7%)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해 “1주일에 1시간 이내”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90명(57.2%)으로 가장 높았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내 안전보건활동이 1주일에 몇 시간이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3시간 이상”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100명(30.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안전보건활동으로 사업장의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개선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215명(64.8%)으로 조사되었음.
- ‘사업장 내에 따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이 있으십니까?’에 대해 “있음” 145명(43.7%), 있는지 모르거나 없는 경우가 187명(56.3%)으로 더 많이 차지하였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실시하는 업무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업무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118명, 35.5%), 참여 수준이 가장 높은 업무로는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251명, 75.6%), 활동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은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208명, 62.7%)으로 나타남.
-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근로자의 무관심 및 협조 부족”(216명, 65.1%)이라고 응답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터뷰 조사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모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사업장 내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장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및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정부의 경우,

기업 평가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 기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촉진 시켜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대한 적절한 활동 시간 보장, 교육지원, 위촉인원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우수 사례 분석

- 최근 3년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총 18건의 우수사례가 있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는 형식을 살펴본 결과, 안전문화 확산 사례, 작업장 개선사례, 자체점검 참여, 안전활동참여(위험성평가), 그 외에 안전보건예방 활동과 개선사례 등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기업 내에서 재해예방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음.

2) 시사점

- 실태조사를 통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성화방안을 연구하였지만, 연구기간이 짧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차후 해외제도의 연구를 통하여 해외에서 유사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제도를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해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비교를 통한 효과적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성화 방안이라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3. 연구활용방안

1) 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특성과 위험요인에 따른 적절한 인력이 위촉되어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며, 사업장의 근로자수 규모별·위험요인에 대한 공정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1주일에 1시간 정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주일에 3시간 정도의 시간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장의 특성이 다르므로 지역별·업종별로 나누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필요한 교육(안전문화 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지역별 유사지역·업종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우수사례, 사망사고, 재해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법령의 개정사항, 혹은 추가사항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이를 위해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록 등 제출 서류에 개인 휴대폰을 기입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 항목을 삽입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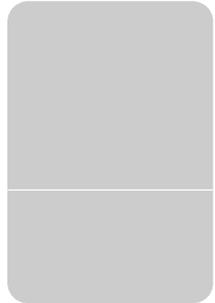
2) 활용방안

- 본 연구를 통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운영 실태(활동시간, 적정인력 수 등)의 개선 및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차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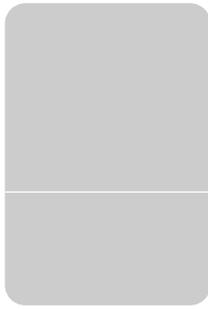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인제대학교 조흥학 교수
-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김부관
 - ☎ 052-703-0821
 - e-mail: kbg7826@kosha.or.kr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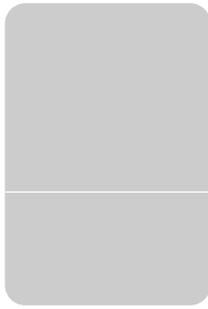
I. 서 론	3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목표	9
1) 국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운영 실태조사	9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실제 모범 사례 분석	9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적정 업무·인력 및 활동 시간 제시	9
3. 연구내용 및 방법	10
1) 연구내용	10
2) 연구방법	11
II.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	15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문헌 고찰	15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한 현황	18
1) 이정열 외 2명(200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상의 실태조사 현황	18



목 차

- 2) 2015년 이상직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황(2013년 기준) 19
-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문제점 20
 - 1) 법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력(現 1명) 수행시간 부족 20
 -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 기간 미비 및 부족 20
 -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형식적 운영 21
- Ⅲ.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축 및 재해 현황 25**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축 현황 25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축 현황 25
 - 2) 청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축 현황 26
 -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축 유무에 따른 재해 현황 30
 - 1) 전체 사업장, 위축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축 사업장의
재해 비교 30
 - 2) 전체 사업장, 위축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축 사업장의
업종별 재해 비교 42
 - 3) 전체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축 사업장의 규모별 재해 비교 ... 54

3. 소결	60
IV.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실태조사	65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문조사	65
1) 설문조사 개요	65
2) 설문조사 결과	66
3) 설문조사 소결	91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터뷰조사	93
1) 인터뷰 조사 개요	93
2) 인터뷰 조사 결과	95
3) 인터뷰 조사 소결	122
V.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7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우수사례 분석	127



목 차

1) 안전문화 확산	127
2) 작업장 개선	130
3) 자체 점검에 참여	134
4) 안전활동 참여(위험성평가 참여)	138
5) 안전보건예방 활동 및 개선	141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적 개선방안	144
1) 사업장 규모·위험요인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적정인력 방안	145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의 적정(안) 제시	152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교육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155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정책적 지원방안	157
1) 정부의 지원	157
2) 사업주의 지원	162
VI. 결 론	167
참고문헌	171

Abstract	173
부 록(설문지)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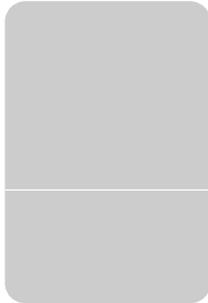


표 목차

〈표 Ⅰ-1〉 우리나라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추진 과정	5
〈표 Ⅰ-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6
〈표 Ⅰ-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6
〈표 Ⅰ-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7
〈표 Ⅱ-1〉 표본 설계	18
〈표 Ⅱ-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황 분석(2013.12.31. 기준)	19
〈표 Ⅲ-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현황	26
〈표 Ⅲ-2〉 청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현황	27
〈표 Ⅲ-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근거 규정	30
〈표 Ⅲ-4〉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	31
〈표 Ⅲ-5〉 전체 사업장의 재해 현황	34
〈표 Ⅲ-6〉 위촉 대상 사업장의 재해 현황	35
〈표 Ⅲ-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의 재해 현황	36
〈표 Ⅲ-8〉 위촉 대상 사업장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의 재해 현황 비교	37
〈표 Ⅲ-9〉 전체,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의 재해 비교(건설업 제외)	39
〈표 Ⅲ-10〉 건설업 사업장의 재해 현황	41
〈표 Ⅲ-11〉 제조업의 재해 현황	43

〈표 III-12〉 전기가스 수도업의 재해 현황	45
〈표 III-13〉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재해 현황	47
〈표 III-14〉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의 재해 현황	49
〈표 III-15〉 숙박, 음식점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의 재해 현황 ...	51
〈표 III-16〉 기타의 사업의 재해 현황	53
〈표 III-17〉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별 재해 현황	55
〈표 III-18〉 건설업 공사금액별 재해 현황	58
〈표 IV-1〉 설문조사 내용	65
〈표 IV-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 여부	66
〈표 IV-3〉 전체 업종별·규모별	68
〈표 IV-4〉 응답자의 성별	70
〈표 IV-5〉 응답자의 연령별	71
〈표 IV-6〉 응답자의 근속기간별	72
〈표 IV-7〉 응답자의 직위별	73
〈표 IV-8〉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일한 기간	74
〈표 IV-9〉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원수	75
〈표 IV-1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2명 이상인 이유	76
〈표 IV-1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인원의 바람직한 기준	77
〈표 IV-1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타임오프	78
〈표 IV-13〉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 내 안전보건활동 시간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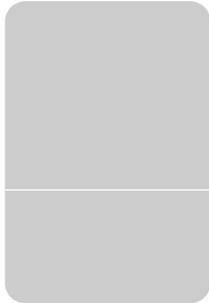


표 목차

〈표 IV-1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투입이 필요한 안전보건활동의 적정 시간 ...	80
〈표 IV-1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안전보건활동으로 사업장의 환경 개선 여부 ..	81
〈표 IV-16〉 사업장 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 유무	82
〈표 IV-1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의 발생 빈도	84
〈표 IV-1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의 참여 수준	86
〈표 IV-19〉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별 중요도	88
〈표 IV-2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시 어려운 점	89
〈표 IV-2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	90
〈표 IV-2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터뷰조사 대상 및 수	93
〈표 IV-23〉 전문가 회의 대상 및 수	94
〈표 IV-24〉 인터뷰조사 내용	94
〈표 V-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인원의 예상 기준	147
〈표 V-2〉 업종별 사망자(2021년기준)	149
〈표 V-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적정 활동시간	153

[그림 I-1] 연구 흐름도	11
[그림 III-1] 전체,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의 재해율 현황(건설업 제외)	39
[그림 III-2] 건설업 사업장의 재해율 현황	41
[그림 III-3] 제조업의 재해율 현황	43
[그림 III-4] 전기가스 수도업의 재해율 현황	45
[그림 III-5]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재해율 현황	47
[그림 III-6]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의 재해율 현황	49
[그림 III-7] 숙박, 음식점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재해율 현황 ..	51
[그림 III-8] 기타의 사업의 재해율 현황	53
[그림 III-9]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별 재해율 현황	55
[그림 III-10] 건설업의 공사금액별 재해율 현황	59
[그림 IV-1] 응답자의 업종별·규모별 상시근로자수(건설업 제외)	69
[그림 IV-2] 응답자의 규모별 공사금액(건설업인 경우)	69
[그림 IV-3] 응답자의 성별	70
[그림 IV-4] 응답자의 연령별	71
[그림 IV-5] 응답자의 근속기간별	72
[그림 IV-6] 응답자의 직위별	73
[그림 IV-7]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일한 기간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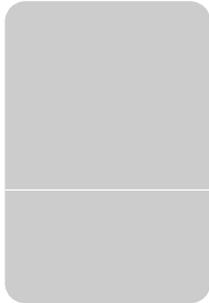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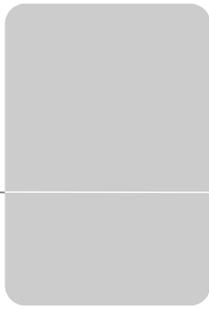


표 목차

[그림 IV-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원수	75
[그림 IV-9]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2명 이상인 이유	76
[그림 IV-1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인원의 바람직한 기준	77
[그림 IV-1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타임오프	78
[그림 IV-12]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 내 안전보건활동 시간	79
[그림 IV-1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투입이 필요한 안전보건활동의 적정 시간	80
[그림 IV-1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안전보건활동으로 사업장의 환경 개선 여부 ..	81
[그림 IV-15] 사업장 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 유무	82
[그림 V-1] 장기적인 방안의 홍보 활성화 방안	161
[그림 V-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정보 전달 체계	162

I. 서론

.....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중대재해 규모, 즉 사고사망만인율 0.43‰(2021년 기준, 사망자 수 828명)로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8개국 중 34위로 영국의 1970년대와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에 해당 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¹⁾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30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의 목표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0‰로 감축하는 것으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²⁾

특히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 행정을 통한 정부 주도형 안전보건관리 정책에서 기업의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장 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보건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안전 문화·관행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사업장 내 안전문화 저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³⁾

1)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2.11.30., 1면.

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2.11.30., 8면.

3)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우리나라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도입 배경으로는 1990년대 들어 대기업,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발전과 다양한 기계·기구 및 유해·위험물질 사용, 시설·설비의 대형화 및 중량화 등에 따른 중대재해 유발 요인이 사업장 내에 내재 되어 있었으며, 사전 안전 예방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해·위험요인이 증가하였다. 또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법령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 근로자 스스로 이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스스로 자신의 법령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지도·감독 등에 의한 수동적 안전관리 활동보다는 사업장에서 능동적인 안전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장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 전환을 요구하여 사업장 스스로 해결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측면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하여 사업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다.⁴⁾ 그래서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노·사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시작되어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법적 근거(산안법 제61조의 2)를 마련하게 되었다.⁵⁾

또한 1997년 5월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대상 및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운영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었으며, 2019년 1월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2020년 1월 인용조문 개정만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 개정이 없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었다.

4) 안전보건공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기초소양 및 전문역량강화교육교재, 2021

5) 윤조덕 외1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7, p.162.

또한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의 이정열 외 2명(200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조사” 연구 외의 추가 연구 자료는 없었고, 2023년 로드맵에 따른 노·사참여를 통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실태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량 및 직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 작동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운영실태 현황분석 및 모범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표 I-1〉 우리나라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추진 과정

연도	내용
1995.1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시범운영 실시
1996.12	산업안전보건법에 법적 근거 마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규정 신설(법 제61조의2)
1997.0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 마련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대상 및 업무에 대한 규정 신설(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2)
1997.1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
2019.0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전부개정(20.1.16)
2020.01	고용노동부 예규 6차 개정(예규 제 164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표 I-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I-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제8호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표 I-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예규 제164호, 2020. 1.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명예감독관의 업무)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장의 명예감독관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추천 등) ① 영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예규 제164호, 2020. 1. 16., 일부개정]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증명사진 2장

②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제3호·제4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사람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예규 제164호, 2020. 1. 16., 일부개정]

제5조(위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25조의2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임기만료일까지 명예감독관이 사임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추천권자가 후임 명예감독관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4조(재검토기한 3년)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구목표

이번 연구과제로 주어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현황과 모범 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의 목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해 국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실태조사를 토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 국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운영 실태조사

국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종·지역별 위촉 수와 운영실태분석, 문제점, 개선 요구사항을 조사한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가 산업재해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성 분석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실제 모범 사례 분석

모범사례 수집 및 해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터뷰조사 실시를 통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시 필수 수행 요소 파악한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적정 업무·인력 및 활동 시간 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적정 업무·인력 및 활동 시간에 대한 심층 인터뷰 및 전문가 포럼을 실시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황분석 및 제도의 효용성 연구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종·지역별 위촉 수와 운영실태 현황분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가 산업재해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성 분석 (현장 조사 병행)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실제 모범 사례 분석

- 모범사례 수집 및 해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터뷰조사 실시
- 수집 사례 분석으로 성과 원인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시 필수 수행 요소 파악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적정 업무·인력 및 활동 시간 제시 및 추가 과제 발굴

2) 연구방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현황과 모범 사례 분석 연구”를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하였다.



[그림 I-1] 연구 흐름도

Ⅱ.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



II.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문헌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현황과 모범 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에 대한 검토를 위해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를 검색하였고, 이정열 외 2명(200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조사”에 관한 조사보고서 1건만 검색되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실태 및 재해예방 효과 등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 중 28.2%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내 안전보건활동 시간은 주당 8시간 이상이 가장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74.9%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내역으로 자체점검에 참여를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3.6%가 안전보건교육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46.8%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지만, 보고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한 근거 자료 확보 의미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여지고, 추가적인 FGI와 같은 정성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보다 근거가 확실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⁶⁾

그 외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문헌을 조사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로 윤조덕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중심으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논문이 있었다.

윤조덕 외 1명(200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제

6) 이정열 외 2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조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조업, 건설업, 운송업 중심으로”에 따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제도의 문제점으로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 제시(근로자대표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이루어지도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선출방법과 절차, 그리고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의 문제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운영) 3) 정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소극적 운영 및 지원 부족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업주의 인식 제고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대한 불이익금지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2 제2항)의 구체화 및 미이행 시 처벌규정 신설한다. 또한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가능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 필요 및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⁷⁾

박태순(2005) “「제도 도입 10년을 맞이한 지역협의회 운영실태와 그 개선방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자료집)』.”에 따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지역협의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1) 명예감독관 지역협의회 불참자 관리방안 마련 필요 2) 명예감독관의 산재예방 관련 지역기관·단체회의 참석 3) 명예감독관 미위촉 시 과태료 부과 규정 4) 명예감독관 운영규정(노동부 예규)을 개정하여 중앙협의회 구성·운영 5)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비 등 규정 보완 6)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점검 시 명예감독관 입회 확인 서명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⁸⁾

최수일(2002)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개선과 노동운동의 정책과제」, 『노동조합 주도의 산재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7) 윤조덕 외 1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7, pp.159~196.

8) 박태순, 「제도 도입 10년을 맞이한 지역협의회 운영실태와 그 개선방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자료집)』, 국회의원 김영주·제종길, 주관: 명예감독관지역협의회(안산, 안양, 광주, 대전, 청주, 포항), 2005, pp.1~78.

개선정책 토론회(자료집)』에 따르면, 명예감독관 제도 개선방안으로 1) 노동자대표의 추천에 의한 자격 있는 노동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강제 2) 사업장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명예감독관 수 확대 3) 명예감독관의 작업중지권 보장과 각종 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대한 입회 의무화 등 실질적인 역할 범위 확대 4) 제조업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명예감독관 위촉 확대 5)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6) 중앙협의회 결성 및 산별협의회와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언급하였다.⁹⁾

정흥준(2022)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방안”에 따르면,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사참여가 필요하고 노사참여 방안 중의 하나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임으로 이에 대한 필요성으로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와의 연계성 제고 2) 사업장 출입권의 실질적인 보장 3) 활동 시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등 4) 근로자 참여 활성화 방안 5) 소규모 사업장 안전문화 활성화 방안 등을 언급하였다.¹⁰⁾

따라서 선행 연구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운영의 문제점 및 지원의 문제점을 언급·지적하고 있다.

9) 최수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개선과 노동운동의 정책과제」, 『노동조합 주도의 산재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정책 토론회(자료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2, pp.3~38.

10) 정흥준 외 4,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2, pp.138~139.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한 현황

1) 이정열 외 2명(200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상의 실태조사 현황

2007년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업종, 규모, 소재지를 고려하여 건설업과 비건설업을 1:3의 비율로서 선정하였다. 모집단 3,834개소 중 회수샘플 수는 1,063개소 27.7%를 회수하였다. 단 모집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위촉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자 또는 사업주를 선정하였다.

본 조사용역기관의 할당된 표본 설계는 다음과 같다.¹¹⁾

〈표 II-1〉 표본 설계

	건설업	제조업/서비스업
모집단	770	3,064
목표샘플	225	675
회수샘플	217	846
회수률	96.4%	125.3%
표본오차 (신뢰수준 95%)	±3.17%	±1.58%

11) 이정열 외 2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조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2) 2015년 이상직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 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황(2013년 기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한 결과, 2015년 11월 이상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15963호)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2013년 12월 31일 기준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3,623명이 위촉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¹²⁾

이를 지방관서별로 살펴보면,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부산청이 28.46%(98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청이 10.59% (365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의 경우 중부청이 30.11% (5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청이 1.7% (3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황 분석(2013.12.31. 기준)

(단위 : 명)

기관명	총 계	사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계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계	한국 노총	민주 노총	사업주 단체	산재 예방 단체
	3,623	3,447	176	37	87	9	43
서울청	375	365	10	2	7	0	1
중부청	826	773	53	8	27	4	14
부산청	984	981	3	1	2	0	0
대구청	442	393	49	18	10	3	18
광주청	467	439	28	2	23	0	3
대전청	529	496	33	6	18	2	7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이상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15963호), 2015년 10월]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위에서 언급한 2015년 이상직 의원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황을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실태조사 대상은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실시하며,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황은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단, 연구상대역과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도 있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문제점

따라서 기존 연구보고서와 이번 연구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문제점을 찾아본 결과 업무수행 인력 부족, 수행시간 부족, 형식적인 운영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1) 법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력(現 1명) 수행시간 부족

모기업 및 사내 협력사의 총 상시 근로자는 약 65,000명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 업무 및 사업장 내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 업무 등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10가지 업무를 1명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수행 시간이 부족하다.¹³⁾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 기간 미비 및 부족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법정 업무수행을 1개월 기준으로 5일 근무로 1년 기준 60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에 비해 수행 기간이 부족, 업무 공백 및 법정 수행 역할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시 근

13) 이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현황과 모범사례 분석」 연구과제의 실태조사 중 인터뷰 조사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임.

로가 아닌 계속 근로로 법리적용·법해석상 맞으며,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형태를 한시근로 형태로 변환시켜 1년 365일 기준 60일만 근무하는 형태를 1년 365일 변경하여 사업장 내의 산업안전 예방 정책에 더욱 현실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¹⁴⁾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형식적 운영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에 사업장 내 위촉과 활동에 대한 구속력이 전혀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는 사업장당 1명으로 사업장 규모 및 위험요인별 적정 업무 및 인력 수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¹⁵⁾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이상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15963호), 2015년 10월]

15) 윤조덕 외 1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7

Ⅲ.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재해 현황

.....

Ⅲ.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재해 현황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현황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현황

고용노동부의 2023년 9월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는 총 2,329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전임은 8.84%(206명), 비전임 91.16%(2,123명)로 조사되었다. 비전임만의 직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사원”이 41.7%(972명)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평조합원” 23.1%(539명), “과장급이상 간부사원” 17.3%(403명), “산업안전보건부서장 및 간부” 8.97%(209명)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임과 비전임의 구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업종별에서는 비전임이 전임보다 높게 나타났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비전임 분포를 보면 91.16%, 전임은 8.84%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 건설업 및 기타의 사업에서는 비전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위는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사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운수창고통신업은 “평조합원”이 많이 나타났으며, 전기가스 수도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산업안전보건부서장 및 간부”의 비율이 적게 나타났다. 또한 숙박,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적게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현황

(단위 : 명)

업종 구분	총계	전임	비전임				
			계	산업안전보건부서 장 및 간부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사원	평조합원
총계	2,329	206	2,123	209	403	972	539
제조업	1,417	108	1,309	132	207	616	354
전기가스 수도업	90	6	84	2	29	28	25
운수창고 통신업	319	58	261	29	69	77	86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119	13	106	9	24	48	25
*숙박업 등	47	8	39	2	12	14	11
*기타의 사업	149	10	139	16	46	50	27
건설업	188	3	185	19	16	139	11

* 숙박,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기타의 사업은 위에서 분류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묶음에 해당함

2) 청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현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황을 청별로 살펴보면, 부산청이 25.2%(588명)로 가장 많고, 중부청 22.2%(516명), 대전청 18.6%(434명), 광주청 13.1%(306명), 대구청 12.3%(287명), 서울청 8.5%(198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청은 운수창고 통신업의 비율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청 외의 청들은 제조업의 비율이 중부청 54.8%, 부산청 69.6%, 대구청 72.8%, 광주청 60.8%, 대전청 72.1%로 분석되었다.

청별로 전임과 비전임을 비교 해 본 결과 모든 청별에서 비전임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전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위는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사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 청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현황

(단위 : 명)

청별 구분	업종 구분	총계	전임	비전임				
				계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및 간부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사원	평조합원
총계		2,329	206	2,123	209	403	972	539
서울청	소계	198	25	173	14	45	73	41
	제조업	17	0	17	1	6	8	2
	전기가스 수도업	5	0	5	0	0	2	3
	운수창고 통신업	91	17	74	6	23	25	20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28	6	22	2	5	9	6
	*숙박업 등	8	1	7	0	2	2	3
	*기타의 사업	25	1	24	3	7	8	6
	건설업	24	0	24	2	2	19	1
중부청	소계	516	62	454	37	96	210	111
	제조업	283	31	252	22	51	107	72
	전기가스 수도업	27	4	23	0	11	7	5
	운수창고 통신업	45	13	32	5	8	5	14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32	3	29	1	7	15	6
	*숙박업 등	13	7	6	0	1	2	3
	*기타의 사업	40	4	36	1	12	16	7
	건설업	76	0	76	8	6	58	4
부산청	소계	588	56	532	63			
	제조업	409	37	372	42	48	178	104

청별 구분	업종 구분	총계	전임	비전임				
				계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및 간부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사원	평조합원
	전기가스 수도업	18	1	17	1	7	4	5
	운수창고 통신업	78	16	62	8	15	18	21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18	1	17	2	1	11	3
	*숙박업 등	10	0	10	1	4	3	2
	*기타의 사업	27	0	27	5	8	8	6
	건설업	28	1	27	4	2	20	1
대구청	소계	287	9	278	24	36	141	77
	제조업	209	5	204	19	22	103	60
	전기가스 수도업	6	0	6	0	3	2	1
	운수창고 통신업	32	3	29	1	4	10	14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8	0	8	0	0	6	2
	*숙박업 등	2	0	2	0	2	0	0
	*기타의 사업	14	1	13	2	5	6	0
	건설업	16	0	16	2	0	14	0
광주청	소계	306	24	282	24	54	126	78
	제조업	186	16	170	15	22	85	48
	전기가스 수도업	14	0	14	0	5	4	5
	운수창고 통신업	41	4	37	3	10	12	12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21	1	20	1	8	6	5

Ⅲ.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재해 현황

청별 구분	업종 구분	총계	전임	비전임				
				계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및 간부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사원	평조합원
대전청	*숙박업 등	6	0	6	0	1	4	1
	*기타의 사업	19	1	18	2	7	5	4
	건설업	19	2	17	3	1	10	3
	소계	434	30	404	47	87	180	90
	제조업	313	19	294	33	58	135	68
	전기가스 수도업	20	1	19	1	3	9	6
	운수창고 통신업	32	5	27	6	9	7	5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12	2	10	3	3	1	3
	*숙박업 등	8	0	8	1	2	3	2
	*기타의 사업	24	3	21	3	7	7	4
	건설업	25	0	25	0	5	18	2

* 숙박,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기타의 사업은 위에서 분류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묶음에 해당함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유무에 따른 재해 현황

1) 전체 사업장,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의 재해 비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위촉 대상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을 구분하는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전기가스 수도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운수·창고 통신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숙박·음식점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타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으로 분류하여 위촉 대상 사업장으로 구분하였다.

〈표 Ⅲ-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근거 규정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표 Ⅲ-4〉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전체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 현황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2022년 기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율(0.84%)이 전체 사업장의 재해율(0.65%)에 비하여 약간 높게 나타났다. 다만, 위촉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적게 분포되어 있어 재해율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2022년 기준 전체 사업장의 재해율이 0.5% 이상 나온 업종을 살펴본 결과, 건설업 1.25%, 운수창고통신업 1.16%, 제조업 0.79%, 숙박,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0.55%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2021년의 재해율은 1.02%에서 2022년의 재해율은 1.16%로 나타나 재해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22년 기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재해율이 0.5% 이상인 업종으로는 기타의 사업 4.07%, 제조업 0.86%, 건설업 0.84%로 나타났다.

따라서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과의 재해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율이 전체 사업장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근로자수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해자수 기준으로 주요 업종의 재해 현황(2022년 기준)을 살펴 본 결과, 제조업 31,554명 건설업 31,245명으로 나타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제조업 5,500명, 건설업 234명으로 나타나 재해자수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5〉 전체 사업장의 재해 현황

(단위 : 명, 명, %)

업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총계	19,073,438	102,305	0.54	18,725,160	109,242	0.58	18,974,513	108,379	0.57	19,378,565	122,713	0.63	20,173,615	130,348	0.65	
건설업 제외	소계	16,129,696	74,619	0.46	16,237,353	82,031	0.51	16,689,597	81,580	0.49	16,999,814	92,770	0.55	17,679,584	99,103	0.56
	제조업	4,152,058	27,377	0.66	4,045,048	29,274	0.72	4,012,541	28,840	0.72	3,959,780	31,709	0.80	3,988,609	31,554	0.79
	전기가스 수도업	76,967	108	0.14	76,687	111	0.14	79,034	105	0.13	79,791	130	0.16	79,103	129	0.16
	운수창고 통신업	873,232	5,291	0.61	910,585	6,173	0.68	936,449	7,251	0.77	993,678	10,091	1.02	1,071,768	12,468	1.16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1,672,496	4,846	0.29	1,634,003	4,228	0.26	3,638,317	7,014	0.19	3,814,557	8,584	0.23	4,101,714	10,318	0.25
	*숙박업 등	3,006,530	11,271	0.37	3,132,431	13,107	0.42	5,457,024	27,089	0.50	5,489,102	30,024	0.55	5,691,934	31,330	0.55
	**기타의 사업	6,348,413	25,726	0.41	6,438,599	29,138	0.45	2,566,232	11,281	0.44	2,662,906	12,232	0.46	2,746,456	13,304	0.48
건설업	2,943,742	27,686	0.94	2,487,807	27,211	1.09	2,284,916	26,799	1.17	2,378,751	29,943	1.26	2,494,031	31,245	1.25	

* 숙박,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출처 : 산업재해현황분석(2018~2022), 고용노동부

** 기타의 사업은 위에서 분류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모두 포함하였음

〈표 Ⅲ-6〉 위촉 대상 사업장의 재해 현황

(단위 : 명, 명, %)

업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총계	5,915,175	17,661	0.30	5,748,772	20,490	0.36	5,335,387	21,163	0.40	5,391,141	25,403	0.47	-	-	-	
건설업 제외	소계	4,520,196	13,084	0.29	4,561,859	15,162	0.33	4,201,654	15,594	0.37	4,252,319	18,676	0.44	-	-	-
	제조업	1,957,449	7,630	0.39	1,914,372	8,706	0.45	1,899,635	9,011	0.47	1,857,370	10,625	0.57	-	-	-
	전기가스 수도업	43,363	23	0.05	43,748	26	0.06	45,672	30	0.07	45,590	44	0.10	-	-	-
	운수창고 통신업	398,946	1,334	0.33	427,534	1,500	0.35	443,337	1,649	0.37	475,973	2,440	0.51	-	-	-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148,819	162	0.11	156,038	186	0.12	572,041	573	0.10	612,608	590	0.10	-	-	-
	*숙박업 등	178,583	197	0.11	183,565	271	0.15	406,246	501	0.12	387,859	747	0.19	-	-	-
	**기타의 사업	1,793,036	3,738	0.21	1,836,602	4,473	0.24	834,723	3,830	0.46	872,919	4,230	0.48	-	-	-
건설업	1,394,979	4,577	0.33	1,186,913	5,328	0.45	1,133,733	5,569	0.49	1,138,822	6,727	0.59	1,239,643	8,797	0.71	

* 숙박,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출처 : 산업재해현황분석(2018~2022), 고용노동부

** 기타의 사업은 위에서 분류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모두 포함하였음

*** 2022년 재해현황통계에 업종별 통계가 없음, 건설업은 120억원이상 분석하였음

※ 위촉 대상 사업장 : 제조업(50인이상), 전기가스 수도업 및 운수창고 통신업과 기타의 사업(100인 이상),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및 숙박업(300인 이상), 건설업(120억원이상)

〈표 III-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의 재해 현황

(단위 : 명, 명, %)

업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총계	862,212	4,629	0.54	903,972	5,636	0.62	894,438	5,933	0.66	890,104	6,935	0.78	896,891	7,523	0.84	
건설업 제외	소계	845,384	4,603	0.54	878,631	5,559	0.63	862,408	5,721	0.66	859,963	6,706	0.78	869,044	7,289	0.84
	제조업	625,493	3,253	0.52	629,384	3,991	0.63	632,886	4,142	0.65	630,982	5,074	0.80	637,132	5,500	0.86
	전기가스 수도업	21,103	16	0.08	21,712	16	0.07	22,529	22	0.10	22,407	24	0.11	22,919	20	0.09
	운수창고 통신업	101,709	315	0.31	124,655	380	0.30	99,319	284	0.29	96,796	287	0.30	94,882	324	0.34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53,922	56	0.10	57,156	72	0.13	60,348	78	0.13	63,396	120	0.19	67,134	106	0.16
	*숙박업 등	15,840	36	0.23	14,651	46	0.31	17,267	50	0.29	15,447	64	0.41	15,889	74	0.47
	**기타의 사업	27,317	927	3.39	31,073	1,054	3.39	30,059	1,145	3.81	30,935	1,137	3.68	31,088	1,265	4.07
건설업	16,828	26	0.15	25,341	77	0.30	32,030	212	0.66	30,141	229	0.76	27,847	234	0.84	

* 숙박,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기타의 사업은 위에서 분류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모두 포함하였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 제조업(50인이상), 전기가스 수도업 및 운수창고 통신업과 기타의 사업(100인 이상),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및 숙박업(300인 이상), 건설업(120억원이상)

〈표 Ⅲ-8〉 위촉 대상 사업장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의 재해 현황 비교

(단위 : 명, %)

업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	위촉	대상	위촉	대상	위촉	대상	위촉	대상	위촉	
총계	17,661(0.30)	4,629(0.54)	20,490(0.36)	5,636(0.62)	21,163(0.40)	5,933(0.66)	25,403(0.47)	6,935(0.78)	-	7,523(0.84)	
건설업 제외	소계	13,084(0.29)	4,603(0.54)	15,162(0.33)	5,559(0.63)	15,594(0.37)	5,721(0.66)	18,676(0.44)	6,706(0.78)	-	7,289(0.84)
	제조업	7,630(0.39)	3,253(0.52)	8,706(0.45)	3,991(0.63)	9,011(0.47)	4,142(0.65)	10,625(0.57)	5,074(0.80)	-	5,500(0.86)
	전기가스 수도업	23(0.05)	16(0.08)	26(0.06)	16(0.07)	30(0.07)	22(0.10)	44(0.10)	24(0.11)	-	20(0.09)
	운수창고 통신업	1,334(0.33)	315(0.31)	1,500(0.35)	380(0.30)	1,649(0.37)	284(0.29)	2,440(0.51)	287(0.30)	-	324(0.34)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162(0.11)	56(0.10)	186(0.12)	72(0.13)	573(0.10)	78(0.13)	590(0.10)	120(0.19)	-	106(0.16)
	*숙박업 등	197(0.11)	36(0.23)	271(0.15)	46(0.31)	501(0.12)	50(0.29)	747(0.19)	64(0.41)	-	74(0.47)
	**기타의 사업	3,738(0.21)	927(3.39)	4,473(0.24)	1,054(3.39)	3,830(0.46)	1,145(3.81)	4,230(0.48)	1,137(3.68)	-	1,265(4.07)
건설업	4,577(0.33)	26(0.15)	5,328(0.45)	77(0.30)	5,569(0.49)	212(0.66)	6,727(0.59)	229(0.76)	8,797 (0.71)	234(0.84)	

* 숙박,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기타의 사업은 위에서 분류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모두 포함하였음

*** 2022년 재해현황통계에 업종별 통계가 없음, 건설업은 120억원 이상 분석하였음

(1) 전체,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의 재해 비교
(건설업 제외)

전체 사업장과 위촉 대상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사업장에 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자 수가 적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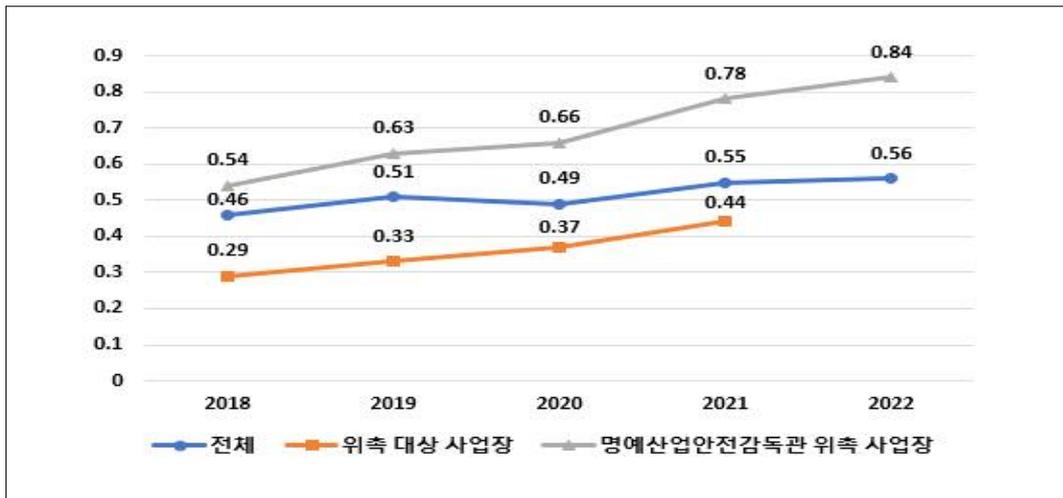
그러나 위촉 대상 사업장보다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수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수를 비교하면 위촉 대상 사업장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월등히 적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적어도 재해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9〉 전체,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의 재해 비교(건설업 제외)

(단위 : 명, %)

연도	전체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2018	16,129,696	74,619	0.46	4,520,196	13,084	0.29	845,384	4,603	0.54
2019	16,237,353	82,031	0.51	4,561,859	15,162	0.33	878,631	5,559	0.63
2020	16,689,597	81,580	0.49	4,201,654	15,594	0.37	862,408	5,721	0.66
2021	16,999,814	92,770	0.55	4,252,319	18,676	0.44	859,963	6,706	0.78
2022	17,679,584	99,103	0.56	-	-	-	869,044	7,289	0.84
합계 (재해율 평균)	83,736,044	430,103	0.51	17,536,028	62,516	0.29	4,315,430	29,878	0.69

* 2022년도 전체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는 공표 전이므로 자료가 없음.



[그림 Ⅲ-1] 전체,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의 재해율 현황(건설업 제외)

(2) 전체,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의 재해 비교 (건설업)

전체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건설업의 재해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사업장에 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재해자 수와 재해율이 월등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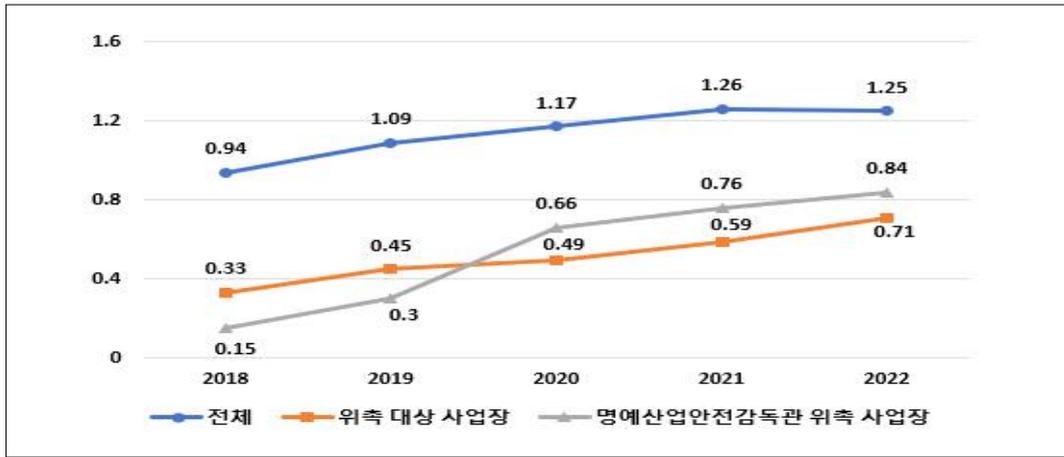
2018년과 2019년에는 위촉 대상 건설업 사업장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건설업 사업장의 재해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2020년~2022년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이 위촉 대상 사업장보다 재해율과 재해자수가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5년간의 건설업 사업장의 재해자수와 재해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10〉 건설업 사업장의 재해 현황

(단위 : 명, %)

연도	전체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2018	2,943,742	27,686	0.94	1,394,979	4,577	0.33	16,828	26	0.15
2019	2,487,807	27,211	1.09	1,186,913	5,328	0.45	25,341	77	0.30
2020	2,284,916	26,799	1.17	1,133,733	5,569	0.49	32,030	212	0.66
2021	2,378,751	29,943	1.26	1,138,822	6,727	0.59	30,141	229	0.76
2022	2,494,031	31,245	1.25	1,239,643	8,797	0.71	27,847	234	0.84
합계 (재해율 평균)	12,589,247	142,884	1.14	6,094,090	30,998	0.51	132,187	778	0.5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120억원 미만 사업장은 제외함.



[그림 Ⅲ-2] 건설업 사업장의 재해율 현황

2) 전체 사업장,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의 업종별 재해 비교

업종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대상 사업장과 위촉된 사업장의 재해율을 분석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 재해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제조업

전체 사업장과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 현황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제조업의 전체 사업장에 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재해자수가 월등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위촉 대상 사업장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근로자수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전체를 중심으로 위촉 대상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8년~2021년까지 4년간의 재해자를 살펴보면, 위촉 대상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35,972명이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16,460명으로 위촉 대상 사업장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 되어 있는 사업장이 약 45.76%로 현저히 적게 나타났다.

2021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3,959,780명이고 위촉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1,857,370명으로 46.91% 정도가 위촉 대상 사업장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은 630,982명으로 대상 사업장의 33.97%만 위촉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은 재해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위촉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나 위촉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타업종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그래서 재해율과 재해자수가 높지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이 재해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은 근로자수가 많은 것에 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정책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을 늘리는 방안이 재해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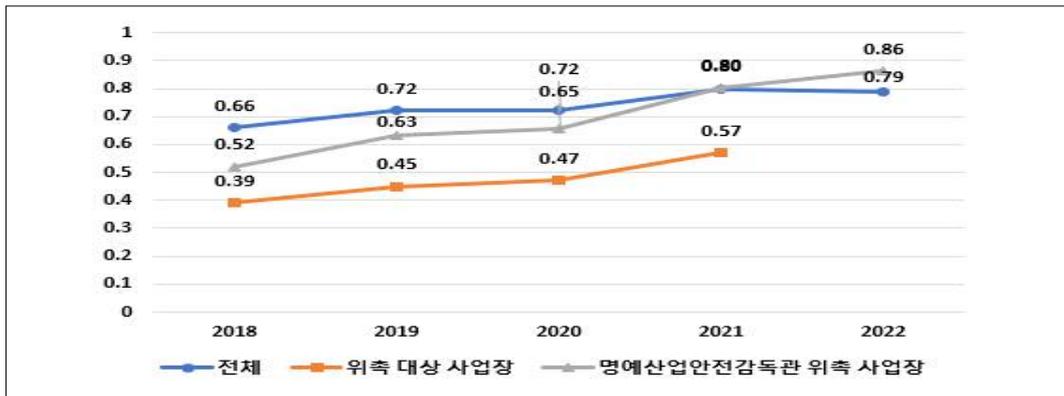
〈표 Ⅲ-11〉 제조업의 재해 현황

(단위 : 명, %)

연도	전체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2018	4,152,058	27,377	0.66	1,957,449	7,630	0.39	625,493	3,253	0.52
2019	4,045,048	29,274	0.72	1,914,372	8,706	0.45	629,384	3,991	0.63
2020	4,012,541	28,840	0.72	1,899,635	9,011	0.47	632,886	4,142	0.65
2021	3,959,780	31,709	0.80	1,857,370	10,625	0.57	630,982	5,074	0.80
2022	3,988,609	31,554	0.79	-	-	-	637,132	5,500	0.86
합계 (재해율 평균)	20,158,036	148,754	0.74	7,628,826	35,972	0.47	3,155,877	21,960	0.6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함.

* 2022년도 전체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는 공표 전이므로 자료가 없음.



[그림 Ⅲ-3] 제조업의 재해율 현황

(2) 전기·가스·수도업

전기·가스·수도업에 관한 재해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재해자수나 재해율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기·가스업종의 경우는 대기업이 많아 근로자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을 보면 전기·가스·수도업의 전체근로자는 79,791명이고 위촉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45,590명으로 57.14%가 위촉 대상 사업장이고 그 중에서 위촉되어있는 사업장은 22,407명으로 49.15%가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업종에 비하여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 이유를 보면 전기·가스·수도업이 위험업종이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해현황을 살펴보면, 재해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위험업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현재 근로자수에 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부족하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책적·제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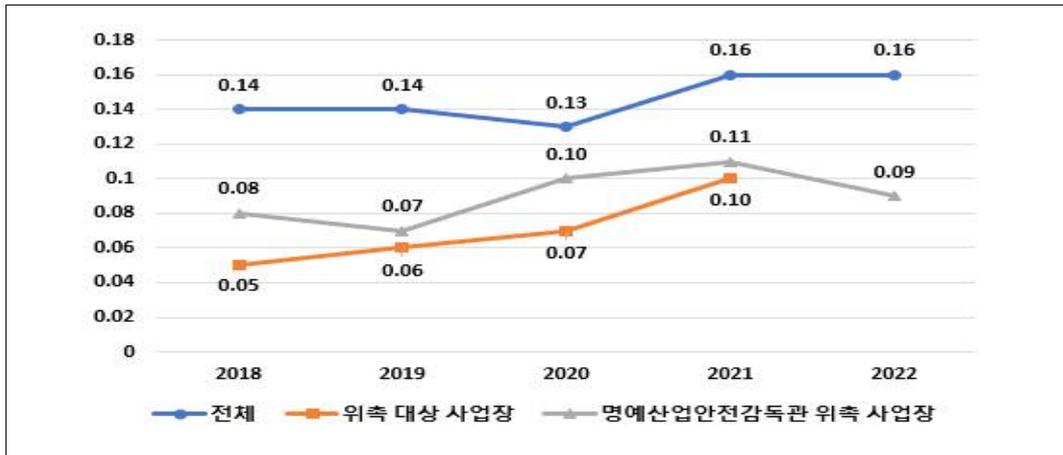
〈표 Ⅲ-12〉 전기가스 수도업의 재해 현황

(단위 : 명, %)

연도	전체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2018	76,967	108	0.14	43,363	23	0.05	21,103	16	0.08
2019	76,687	111	0.14	43,748	26	0.06	21,712	16	0.07
2020	79,034	105	0.13	45,672	30	0.07	22,529	22	0.10
2021	79,791	130	0.16	45,590	44	0.10	22,407	24	0.11
2022	79,103	129	0.16	-	-	-	22,919	20	0.09
합계 (재해율 평균)	391,582	583	0.15	178,373	123	0.07	110,670	98	0.0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함.

* 2022년도 전체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는 공표 전이므로 자료가 없음.



[그림 Ⅲ-4] 전기가스 수도업의 재해율 현황

(3) 운수·창고·통신업

운수·창고·통신업은 전체 사업장과 위촉 대상 사업장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해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살펴 본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자(1,266명)가 위촉 대상 사업장의 재해자(6,923명)보다 18.29%로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에서 재해감소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993,678명이고 위촉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475,973명으로 47.90% 정도가 위촉 대상 사업장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은 96,796명으로 대상 사업장의 20.34%만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운수·창고·통신업이 특성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기가 어려운 업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재해자와 재해율이 낮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업종 특성상 제도적 방안보다는 정책적 방안을 도입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유도하는 것이 재해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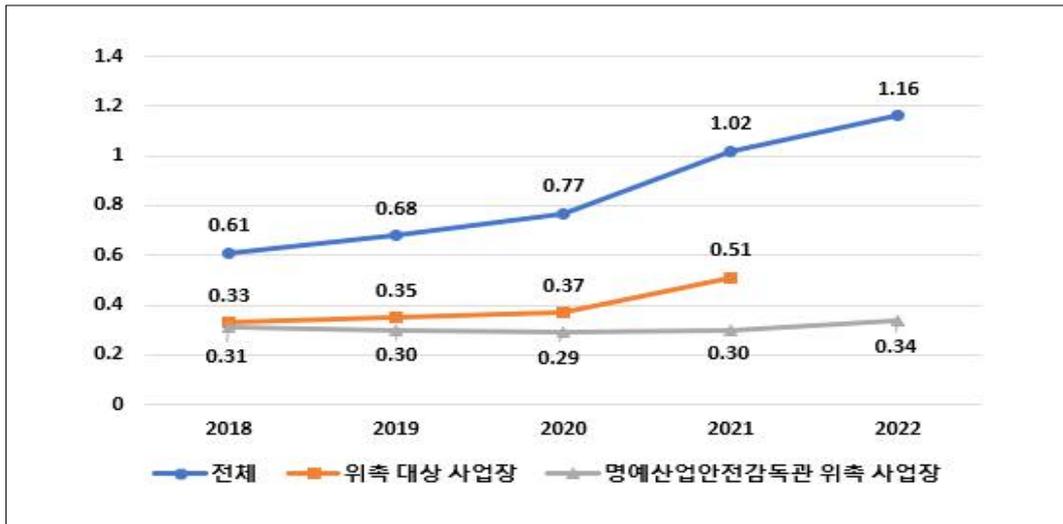
〈표 Ⅲ-13〉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재해 현황

(단위 : 명, %)

연도	전체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2018	873,232	5,291	0.61	398,946	1,334	0.33	101,709	315	0.31
2019	910,585	6,173	0.68	427,534	1,500	0.35	124,655	380	0.30
2020	936,449	7,251	0.77	443,337	1,649	0.37	99,319	284	0.29
2021	993,678	10,091	1.02	475,973	2,440	0.51	96,796	287	0.30
2022	1,071,768	12,468	1.16	-	-	-	94,882	324	0.34
합계 (재해율 평균)	4,785,712	41,274	0.85	1,745,790	6,923	0.39	517,361	1,590	0.3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함.

* 2022년도 전체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는 공표 전이므로 자료가 없음.



[그림 Ⅲ-5]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재해율 현황

(4)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을 보면 전체 사업장과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살펴 본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위촉 대상 사업장에 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재해자수가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8년, 2019년, 2020년에 비해 2021년, 2022년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수와 재해자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산재보험업종의 변화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업종이 늘어나면서 2020년~2021년에는 위촉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늘어났고 재해자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년을 보더라도 근로자수는 3,814,557명이고 위촉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612,608명으로 16.06% 정도가 위촉 대상 사업장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은 63,396명으로 위촉 대상 사업장의 10.35%만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특성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기가 어려운 업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재해자와 재해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관심도와 업종의 확대로 인하여 업종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며, 재해감소를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의 재해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 등의 보건 관련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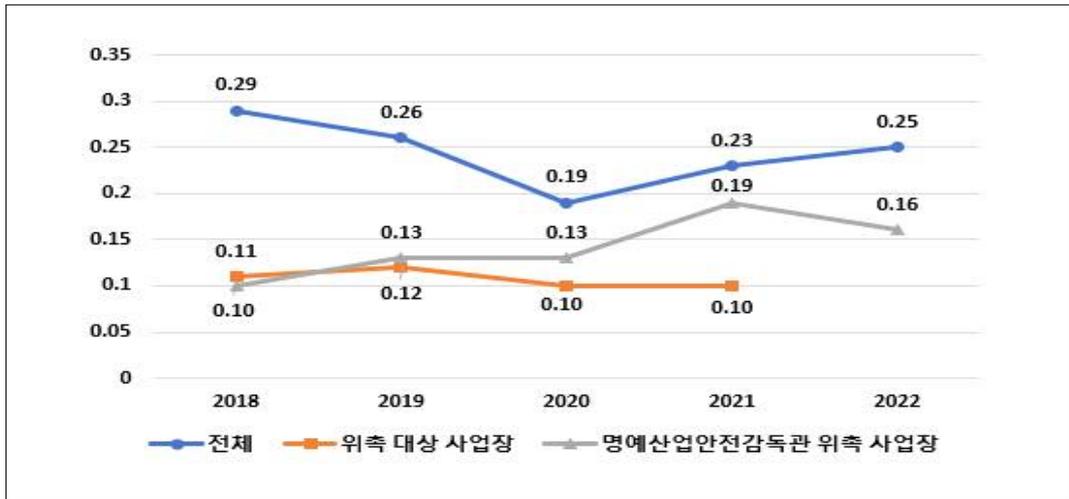
〈표 Ⅲ-14〉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의 재해 현황

(단위 :명, %)

연도	전체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2018	1,672,496	4,846	0.29	148,819	162	0.11	53,922	56	0.10
2019	1,634,003	4,228	0.26	156,038	186	0.12	57,156	72	0.13
2020	3,638,317	7,014	0.19	572,041	573	0.10	60,348	78	0.13
2021	3,814,557	8,584	0.23	612,608	590	0.10	63,396	120	0.19
2022	4,101,714	10,318	0.25	-	-	-	67,134	106	0.16
합계 (재해율 평균)	14,861,087	34,990	0.24	1,489,506	1,511	0.11	301,956	432	0.1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함.

* 2022년도 전체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는 공표 전이므로 자료가 없음.



[그림 Ⅲ-6]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의 재해율 현황

(5) 숙박·음식점·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의 전체 사업장 재해율과 재해자수가 2019년 13,107명(0.42%)에서 2020년 27,089명(0.50%)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촉 대상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현황과 비교·분석하여 살펴 본 결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재해자수와 재해율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확인한 결과, 산업재해현황 분석자료에서 2020년 기준으로 업종별 분류의 기준이 달라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업종의 증가로 인한 근로자수의 증가와 재해자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21년을 보더라도 근로자수는 5,489,102명이고 위촉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387,859명으로 7.07% 정도가 위촉 대상 사업장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은 15,447명으로 위촉 대상 사업장의 3.98%만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숙박·음식점·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기가 어려운 업종이지만, 타 업종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위촉현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촉 대상 사업장에 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재해자수와 재해율이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숙박·음식점·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도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위촉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산업환경이 변화하면서 서비스업종의 확대로 인한 숙박·음식점·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 업종들에 대한 재해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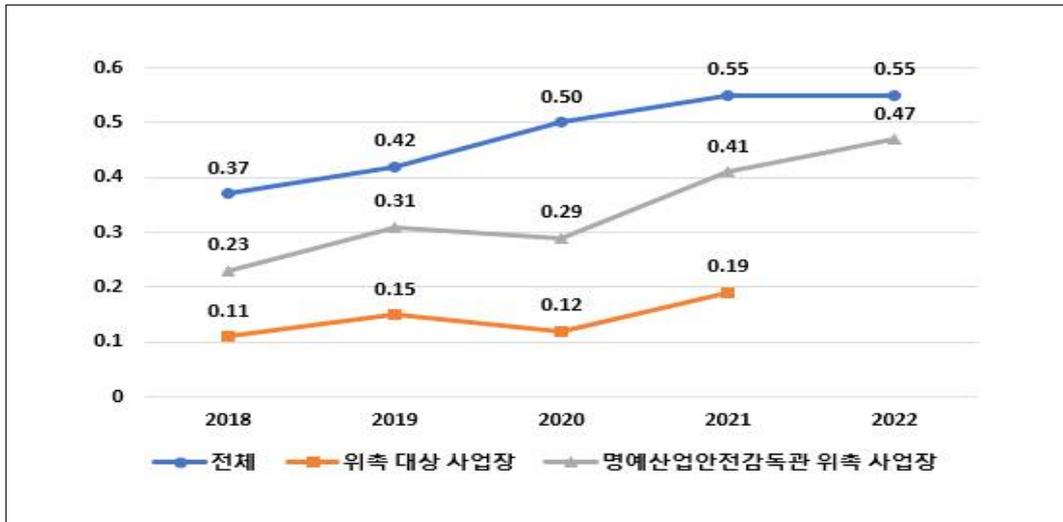
〈표 Ⅲ-15〉 숙박. 음식점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의 재해 현황

(단위 : 명, %)

연도	전체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2018	3,006,530	11,271	0.37	178,583	197	0.11	15,840	36	0.23
2019	3,132,431	13,107	0.42	183,565	271	0.15	14,651	46	0.31
2020	5,457,024	27,089	0.50	406,246	501	0.12	17,267	50	0.29
2021	5,489,102	30,024	0.55	387,859	747	0.19	15,447	64	0.41
2022	5,691,934	31,330	0.55	-	-	-	15,889	74	0.47
합계 (재해율 평균)	22,777,021	112,821	0.48	1,156,253	1,716	0.14	79,094	270	0.3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함.

* 2022년도 전체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는 공표 전이므로 자료가 없음.



[그림 Ⅲ-7] 숙박. 음식점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재해율 현황

(6) 기타의 사업

기타의 사업은 제조업과 운수창고 통신업, 전기가스업, 보건복지사업, 숙박 및 임대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타의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사업장,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살펴 본 결과, 다른 업종과 달리 기타의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장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전체 사업장과 위촉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비해 월등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석탄공사도계광업소(석탄 광업) 재해자수 199명, (주)경동 상덕광업소(석탄 광업) 재해자수 184명, 대한석탄공사장성광업소(석탄 광업) 재해자수 373명으로 석탄 광업의 위험업종이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재해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타의 업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들이 적어 근로자수가 적게 나타났으며, 전체 사업장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을 보더라도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2,662,906명이고 위촉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872,919명으로 32.78% 정도가 위촉 대상 사업장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은 30,935명으로 위촉 대상 사업장의 3.54%만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특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4년간의 재해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계속 재해자수와 재해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 사업장의 재해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나, 업종별 특성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운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뷰 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기타의 업종은 제조업과 달리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필요성과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홍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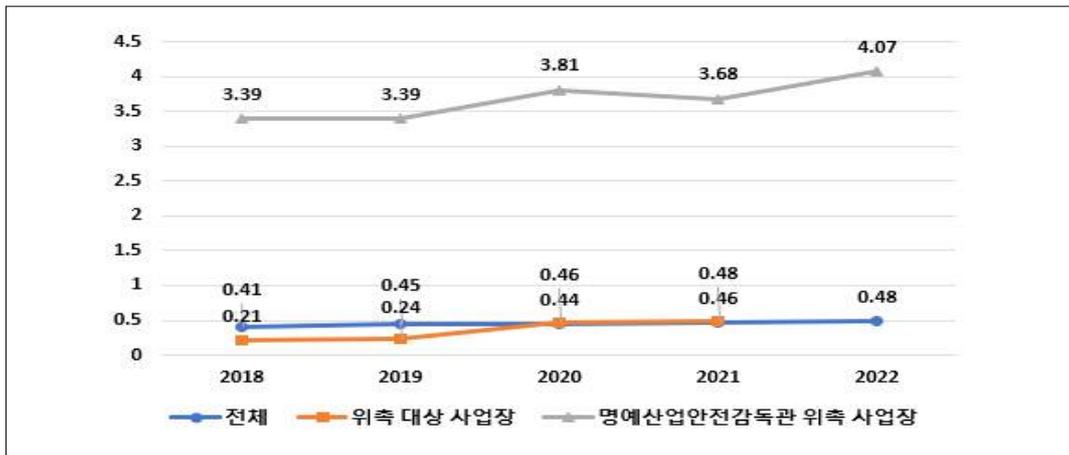
〈표 Ⅲ-16〉 기타의 사업의 재해 현황

(단위 : 명, %)

연도	전체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2018	6,348,413	25,726	0.41	1,793,036	3,738	0.21	27,317	927	3.39
2019	6,438,599	29,138	0.45	1,836,602	4,473	0.24	31,073	1,054	3.39
2020	2,566,232	11,281	0.44	834,723	3,830	0.46	30,059	1,145	3.81
2021	2,662,906	12,232	0.46	872,919	4,230	0.48	30,935	1,137	3.68
2022	2,746,456	13,304	0.48	-	-	-	31,088	1,265	4.07
합계 (재해율 평균)	20,762,606	91,681	0.45	5,337,280	16,271	0.30	150,472	5,528	3.6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함.

* 2022년도 전체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는 공표 전이므로 자료가 없음.



[그림 Ⅲ-8] 기타의 사업의 재해율 현황

3) 전체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의 규모별 재해 비교

(1)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분류하였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전기가스수도업 100인 이상, 운수창고통신업 100인 이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00인 이상, 숙박업 300인 이상, 기타의 사업 100인 이상, 건설업 120억 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각 업종별 규모의 기준이 달라 규모별로 분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재해현황을 규모별(상시근로자수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가장 많은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가 나타난 제조업의 기준¹⁶⁾으로 규모별 재해현황을 분석하였다.

50~99인 사업장의 경우 위촉 대상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을 비교·분석한 결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재해자수가 확실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적어 재해율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100~299인 사업장과 300~999인의 사업장의 재해현황을 살펴보면 위촉 대상 사업장에 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살펴보면 위촉 대상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에서의 재해자수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재해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1,000인 이상의 사업장 규모도 100인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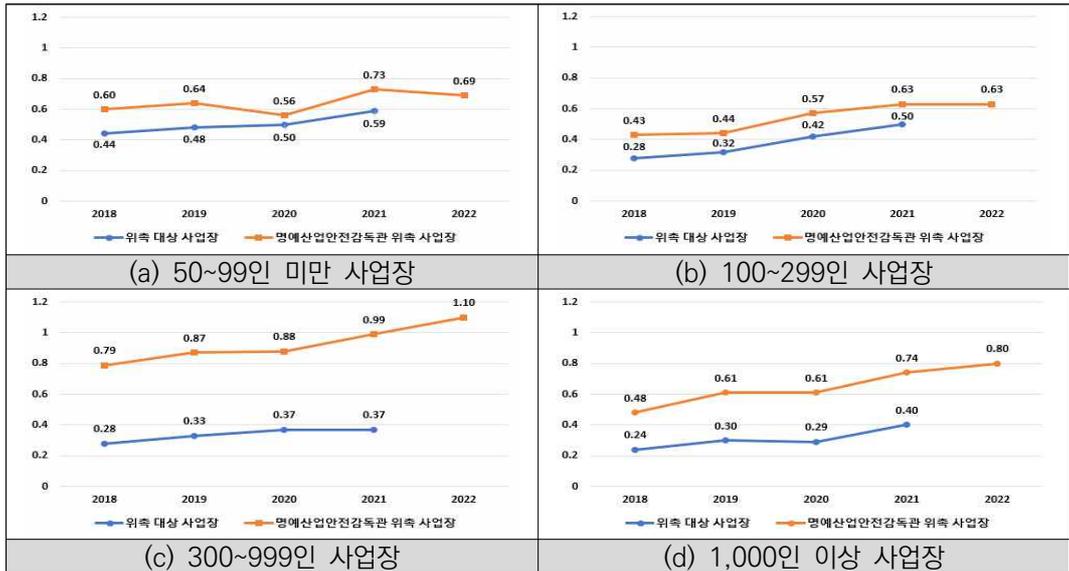
사업장과 동일하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인원이 1명이고 업무 수행 시간도 1주 1시간이므로 사실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수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규모와 위험업종과 작업을 기준으로 업무 수행 시간과 적정인력을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 Ⅲ-17〉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별 재해 현황

(단위 : 명, %)

구분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재해자	재해율	재해자	재해율												
2018	2,368	0.44	104	0.60	4,302	0.28	637	0.43	3,359	0.28	1,502	0.79	3,055	0.24	2,360	0.48
2019	2,460	0.48	117	0.64	4,776	0.32	635	0.44	4,106	0.33	1,715	0.87	3,820	0.30	3,092	0.61
2020	2,438	0.50	104	0.56	4,469	0.42	827	0.57	4,794	0.37	1,718	0.88	3,893	0.29	3,072	0.61
2021	2,726	0.59	131	0.73	5,314	0.50	901	0.63	4,947	0.37	1,897	0.99	5,689	0.40	3,777	0.74
2022	-	-	122	0.69	-	-	893	0.63	-	-	2,129	1.10	-	-	4,145	0.80

※ 2022년도 전체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는 공표 전이므로 자료가 없음



[그림 Ⅲ-9]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별 재해율 현황

(2) 건설업(공사금액별)

건설업의 전체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현황을 공사금액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 사업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보다 공사금액과는 상관없이 항상 재해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재해자수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건설업인 경우 위험작업이 많고, 기인물별 사망사고 전체(706명, 2021년)에서 가설건축구조물 사망사고가 29%(207명)¹⁷⁾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건설용기계 사망자수(26명)를 포함하면 32%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아래〈표 III-18〉의 공사금액별 재해율을 비교해보더라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이 전체적인 재해율에 비해 확연하게 낮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는 경우는 재해감소를 위하여 간접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2년의 공사금액별 비교를 보면, 120억원 미만인 경우 전체 사업장의 재해율(1.81%)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율(0.18%)보다 높게 나타났다. 120억~300억원 미만 위촉 대상 사업장의 재해율(0.97%)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율(0.46%)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300억원~500억원의 경우의 위촉 대상 사업장의 재해율(0.92%)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율(0.92%)과 동일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500억원 이상의 사업장의 재해율(0.63%)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율(0.8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사금액 규모가 300~500억원 미만과 50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살펴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이 위촉 대상 사업장보다 재해율이 유사하거나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 되어 있는 300~500억원 미만과 500억원 이상의 사업장

17)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2021, p341~349

에서 근로자수가 적어 재해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위촉 대상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건설업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낮아 직·간접적으로 재해예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18〉 건설업 공사금액별 재해 현황

(단위 : 명,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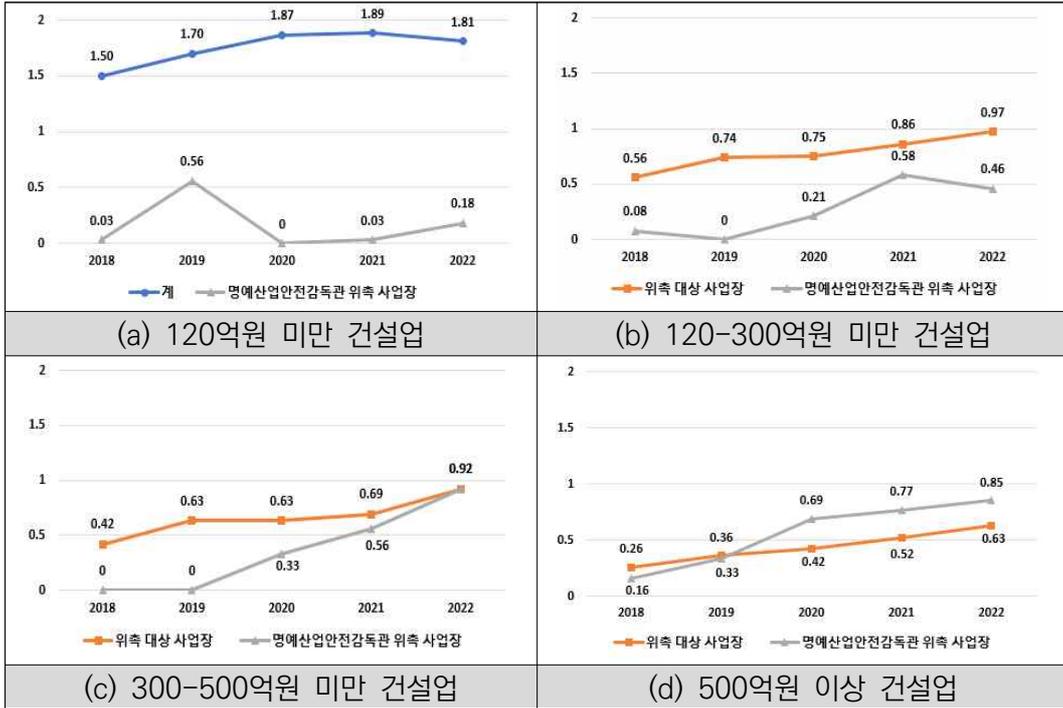
구분	총계																								**분류불능	
	전체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120억원 미만				120-300억원 미만				300-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계			
	재해자	재해율	재해자	재해율	재해자	재해율	재해자	재해율	재해자	재해율	재해자	재해율	재해자	재해율	재해자	재해율	재해자	재해율	재해자	재해율	재해자	재해율	재해자	재해율		
2018	27,686	0.94	4,577	0.33	26	0.15	22,700	1.50	2	0.03	1,288	0.56	1	0.08	633	0.42	0	0.00	2,656	0.26	25	0.16	409	1.19		
2019	27,211	1.09	5,328	0.45	77	0.30	21,547	1.70	7	0.56	1,406	0.74	0	0.00	747	0.63	0	0.00	3,175	0.36	77	0.33	336	1.08		
2020	26,799	1.17	5,569	0.49	212	0.66	20,922	1.87	0	0.00	1,321	0.75	3	0.21	681	0.63	2	0.33	3,567	0.42	207	0.69	308	1.01		
2021	29,943	1.26	6,727	0.59	229	0.76	22,860	1.89	2	0.03	1,575	0.86	4	0.58	827	0.69	4	0.56	4,325	0.52	221	0.77	356	1.15		
2022	31,245	1.25	8,797	0.71	234	0.84	22,132	1.81	12	0.18	1,850	0.97	4	0.46	1,106	0.92	9	0.92	5,841	0.63	221	0.85	316	0.96		

* 120억 미만 건설업 사업장은 위촉 대상 사업장이 아니지만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도 있어 참고적으로 분류하였음.

** 2022년도 전체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에서 분석되지 않는 것은 분류불능으로 되어 있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기준은 120억원 이상 사업장이므로 120억원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함.

Ⅲ.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재해 현황



[그림 Ⅲ-10] 건설업의 공사금액별 재해율 현황

3. 소결

고용노동부의 2023년 9월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는 총 2,329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전임은 8.84%(206명), 비전임 91.16%(2,123명)로 조사되었다. 비전임만의 직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사원”이 41.7%(972명)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평조합원” 23.1%(539명), “과장급이상 간부사원” 17.3%(403명), “산업안전보건부서장 및 간부” 8.97%(209명) 순으로 분포되었다. 또한 모든 업종별에서 비전임이 전임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전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위를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제조업, 건설업 및 기타의 사업에서는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사원”, 운수창고통신업은 “평조합원”이 높게 나타났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황을 청별로 살펴보면, 부산청이 25.2%(588명), 중부청 22.2%(516명), 대전청 18.6%(434명), 광주청 13.1%(306명), 대구청 12.3%(287명), 서울청 8.5%(198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은 운수창고통신업의 비율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청들은 제조업이(중부청 54.8%, 부산청 69.6%, 대구청 72.8%, 광주청 60.8%, 대전청 72.1%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22년 기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율(0.84%)이 전체 사업장의 재해율(0.65%)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해자수를 비교해 보면, 2022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자는 7,523명이고, 전체 사업장의 재해자는 130,348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촉사업장의 재해자와 전체 사업장 재해자의 비율은 5.8%로 나타나 재해자는 적지만, 위촉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적게 분포되어 있어 재해율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전체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

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현황을 근로자 규모별(상시근로자수별)로 살펴본 결과, 1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선임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재해자수 및 재해율이 확실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 달리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자수 및 재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건설업의 전체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현황을 공사금액별로 살펴본 결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보다 공사금액과는 상관없이 항상 재해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22년의 공사금액별 비교를 보면, 120억원 미만인 경우 사업장의 전체 사업장의 재해율(1.81%)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율(0.18%)보다 높게 나타났다. 120억~300억원 미만 위촉 대상 사업장의 재해율(0.97%)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율(0.46%)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300억원~500억원의 경우 위촉 대상 사업장의 재해율(0.92%)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율(0.92%)과 동일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500억원 이상의 사업장의 재해율(0.63%)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재해율(0.8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위촉 대상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과 비교해 보면, 건설업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어 위촉사업장의 재해자수가 낮아 직·간접적으로 재해예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실태조사



IV.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실태조사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설문 대상 : 이상직 의원 대표 발의 보고서¹⁸⁾에 따라 전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데이터 집계 목표치를 2013년 기준 전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447명 중 10%인 345명으로 설정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Google Forms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41명 중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3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설문 수집 및 집계 방법 : Google Forms로 작성된 설문지
- 설문조사 기간 : 2023년 9월 4일 ~ 11월 16일
- 설문조사 내용 : <표 IV-1> 참고

<표 IV-1> 설문조사 내용

내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기간-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활동 내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내 안전보건 업무 참여 수준-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활동 시간(주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효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시 어려운 점-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 존재 여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지원 요청 사항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이상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15963호), 2015년 10월]

2) 설문조사 결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현황 조사”의 설문조사에 참가한 응답자 341명을 대상으로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았다.

■ 귀하는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전체 응답자 총 341명 중에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에 대한 질의에 대해 “네” 332명(97.4%)으로 조사되었고, “아니요” 9명(2.6%)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 여부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명)	백분율(%)
네	332	97.4
아니요	9	2.6
합 계	341	100.0

■ 업종별·규모별 분포

응답자 총 332명의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222명(66.8%), 서비스업 47명(14.2%), 기타업종 47명(14.2%), 건설업 16명(4.8%)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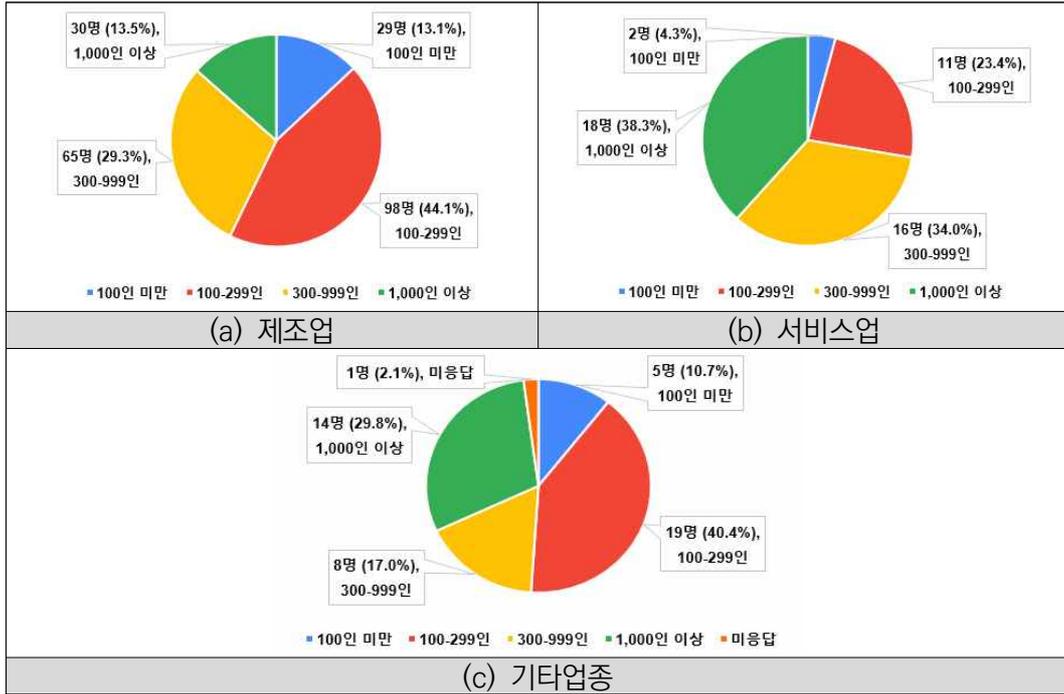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100인 미만 29명(8.7%), 100~299인 98명(29.5%), 300~999인 65명(19.6%), 1,000인 이상 30명(9.1%)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100인 미만 2명(0.6%), 100~299인 11명(3.3%), 300~999인 16명(4.8%), 1,000인 이상 18명(5.5%)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업종의 경우 100인 미만 5명(1.5%), 100~299인 19명(5.7%), 300~999인 8명(2.4%), 1,000인 이상 14명(4.2%), 미응답 1명(0.3%)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100~29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응답자(128명, 38.5%)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응답자 총 16명 중에 건설 경우가 공사금액별로 살펴보면, 120억원 미만 2명(0.6%), 120~300억원 미만 2명(0.6%), 300~500억원 미만 1명(0.3%), 500억원 이상 9명(2.7%)으로 조사되었다. 5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응답자(9명, 2.7%)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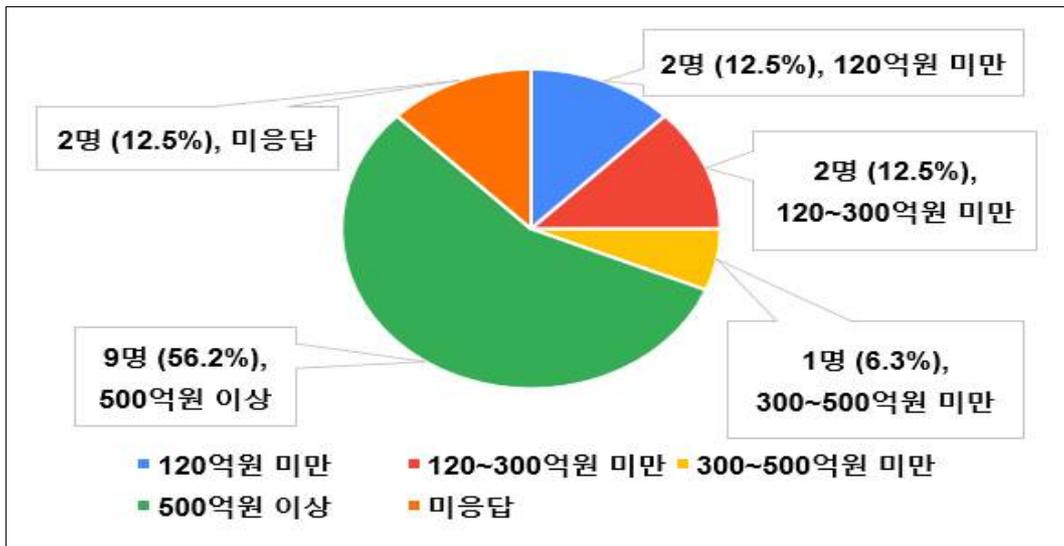
〈표 IV-3〉 전체 업종별·규모별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명)	백분율(%)
제조업 222명 (66.8%)	100인 미만	29	8.7
	100-299인	98	29.5
	300-999인	65	19.6
	1,000인 이상	30	9.1
서비스업 47명 (14.2%)	100인 미만	2	0.6
	100-299인	11	3.3
	300-999인	16	4.8
	1,000인 이상	18	5.5
기타업종 47명 (14.2%)	100인 미만	5	1.5
	100-299인	19	5.7
	300-999인	8	2.4
	1,000인 이상	14	4.2
	미응답	1	0.3
건설업 16명 (4.8%)	120억원 미만	2	0.6
	120~300억원 미만	2	0.6
	300~500억원 미만	1	0.3
	500억원 이상	9	2.7
	미응답	2	0.6
합 계		332	100.0



[그림 IV-1] 응답자의 업종별·규모별 상시근로자수(건설업 제외)



[그림 IV-2] 응답자의 규모별 공사금액(건설업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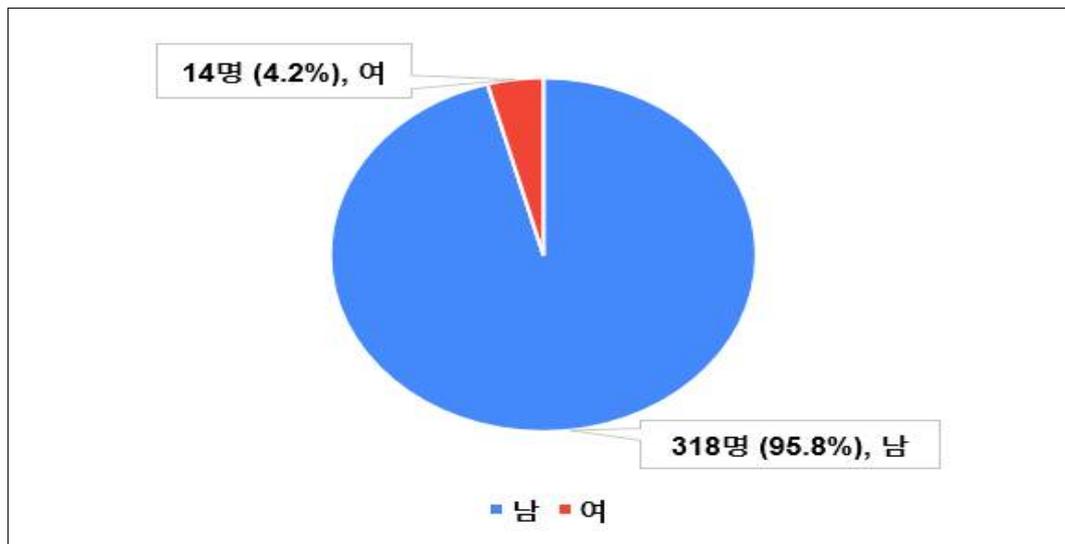
■ 성별

응답자 총 332명 중에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 318명(95.8%), 여자 14명(4.2%)으로 나타났다.

〈표 IV-4〉 응답자의 성별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명)	백분율(%)
남	318	95.8
여	14	4.2
합 계	332	100.0



[그림 IV-3] 응답자의 성별

■ 연령별

응답자 총 332명 중에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4명(1.2%), 30대 32명(9.6%), 40대 128명(38.6%), 50대 153명(46.1%), 60대 이상 15명(4.5%)으로 조사되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40대와 50대가 281명(84.7%)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표 IV-5〉 응답자의 연령별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명)	백분율(%)
20대 이하	4	1.2
30대	32	9.6
40대	128	38.6
50대	153	46.1
60대 이상	15	4.5
합 계	332	100.0



[그림 IV-4] 응답자의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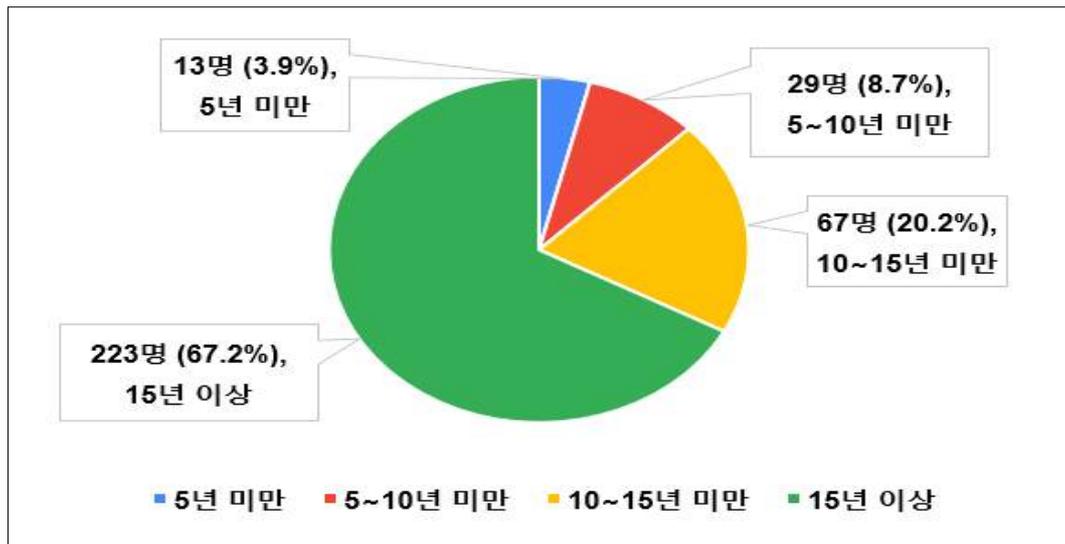
■ 근속기간별

응답자 총 332명 중에 근속기간으로는 5년 미만 13명(3.9%), 5~10년 미만 29명(8.7%), 10~15년 미만 67명(20.2%), 15년 이상 223명(67.2%)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에서 15년 이상 근무 223명(67.2%)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6〉 응답자의 근속기간별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명)	백분율(%)
5년 미만	13	3.9
5~10년 미만	29	8.7
10~15년 미만	67	20.2
15년 이상	223	67.2
합 계	332	100.0



[그림 IV-5] 응답자의 근속기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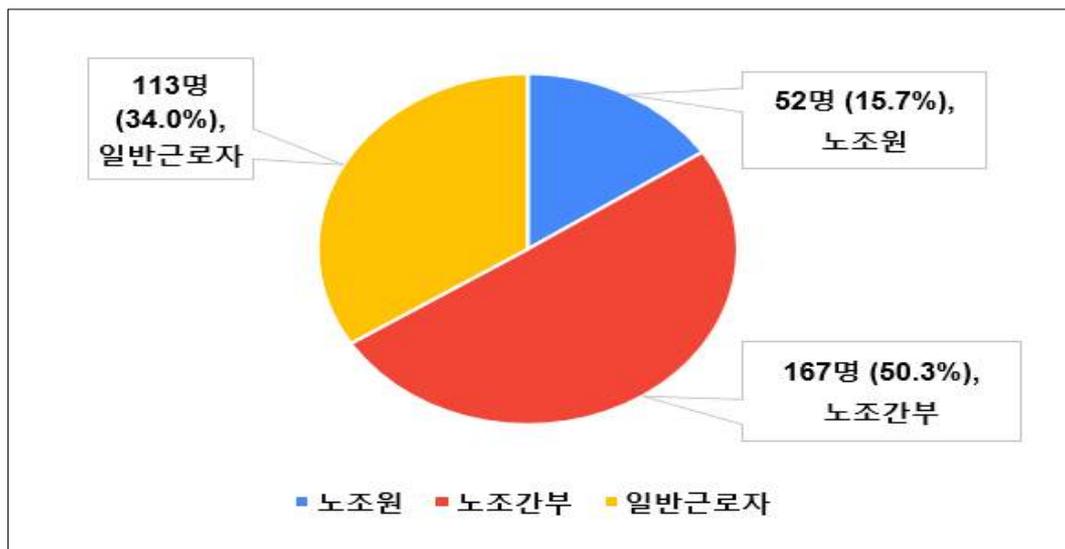
■ 직위별

응답자 총 332명 중에 직위는 노조원 52명(15.7%), 노조간부 167명(50.3%), 일반근로자 113명(34.0%)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중 “노조간부”의 직위를 가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167명(50.3%)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응답자의 직위별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명)	백분율(%)
노조원	52	15.7
노조간부	167	50.3
일반근로자	113	34.0
합 계	332	100.0



[그림 IV-6] 응답자의 직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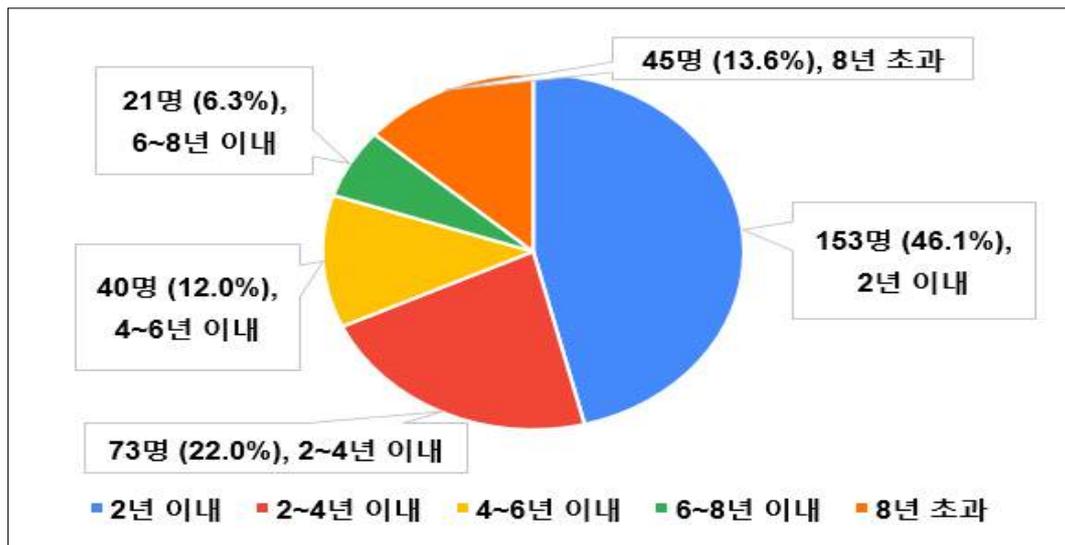
■ 소속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일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일한 기간’에 대해, 전체 332명 응답 중 “2년 이내” 153명(46.1%), “2~4년 이내” 73명(22.0%), “8년 초과” 45명(13.6%), “4~6년 이내” 40명(12.0%), “6~8년 이내” 21명(6.3%)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53명(46.1%)은 2년 이내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인다.

〈표 IV-8〉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일한 기간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명)	백분율(%)
2년 이내	153	46.1
2~4년 이내	73	22.0
4~6년 이내	40	12.0
6~8년 이내	21	6.3
8년 초과	45	13.6
합 계	332	100.0



[그림 IV-7]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일한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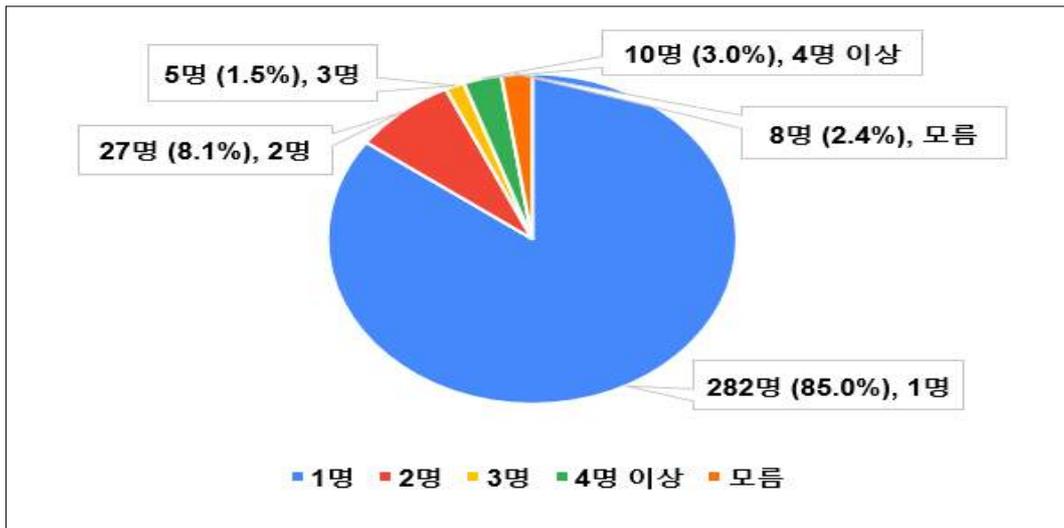
■ 소속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몇 명입니까(본인 포함)?

응답자 총 332명 중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몇 명입니까(본인 포함)’ 대한 질문에 대해 “1명” 282명(85.0%), “2명” 27명(8.1%), “4명 이상” 10명(3.0%), “모름” 8명(2.4%), “3명” 5명(1.5%)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1명만 위촉(282명, 85.0%)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원수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명)	백분율(%)
1명	282	85.0
2명	27	8.1
3명	5	1.5
4명 이상	10	3.0
모름	8	2.4
합 계	332	100.0



[그림 IV-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원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2명 이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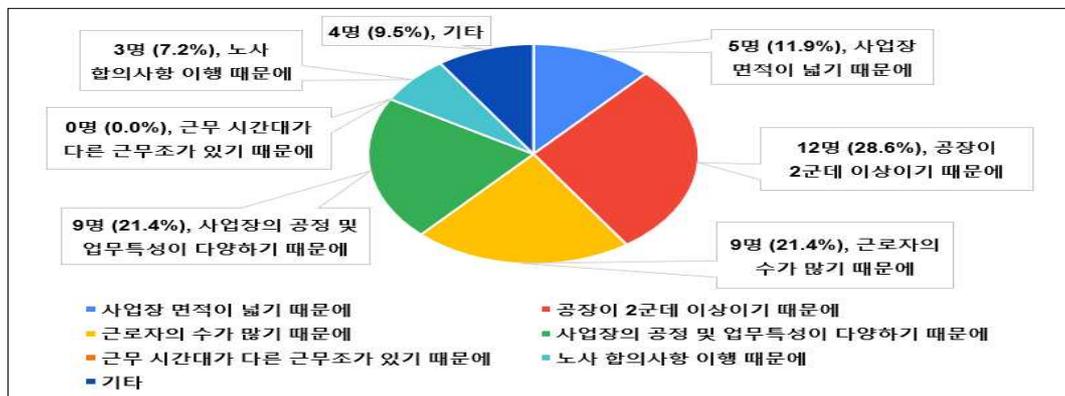
“모름”으로 응답한 8명을 제외하고 2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42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공장이 2군데 이상이기 때문에”(12명, 28.6%), “근로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9명, 21.4%), “사업장의 공정 및 업무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9명, 21.4%)라고 응답하였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2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각각 1명씩”, “전국사업장으로 지역본부가 많아서”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IV-1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2명 이상인 이유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명)	백분율(%)
사업장 면적이 넓기 때문에	5	11.9
공장이 2군데 이상이기 때문에	12	28.6
근로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9	21.4
사업장의 공정 및 업무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9	21.4
근무 시간대가 다른 근무조가 있기 때문에	0	0.0
노사 합의사항 이행 때문에	3	7.2
기타	4	9.5
합 계	42	100.0



〈그림 IV-9〉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2명 이상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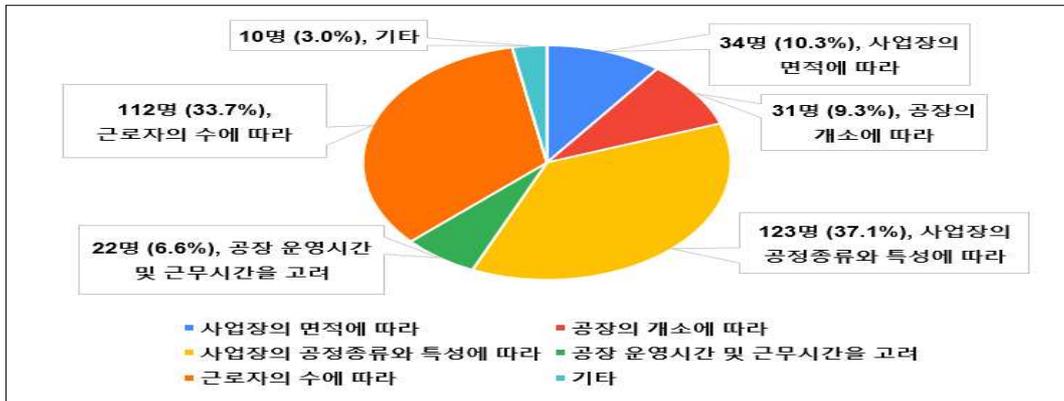
■ 소속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인원의 바람직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인원의 바람직한 기준’에 대해 질의에 “사업장의 공정 종류와 특성에 따라”(123명, 37.1%), “근로자의 수에 따라”(112명, 33.7%)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기타에는 “공장별 직원 수에 따라 위촉”,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의 추천에 따라”,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수 만큼”, “근로자수와 면적에 따라”, “노사협의체 인원에 따라”, “제도권고에 맞추어 가용인원에 따라”, “전국 분산 사업장에 따라”, “단체협약에 따라” 등의 의견으로 위촉 인원이 1명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인원의 바람직한 기준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명)	백분율(%)
사업장의 면적에 따라	34	10.3
공장의 개소에 따라	31	9.3
사업장의 공정종류와 특성에 따라	123	37.1
공장 운영시간 및 근무시간을 고려	22	6.6
근로자의 수에 따라	112	33.7
기타	10	3.0
합 계	332	100.0



〔그림 IV-1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인원의 바람직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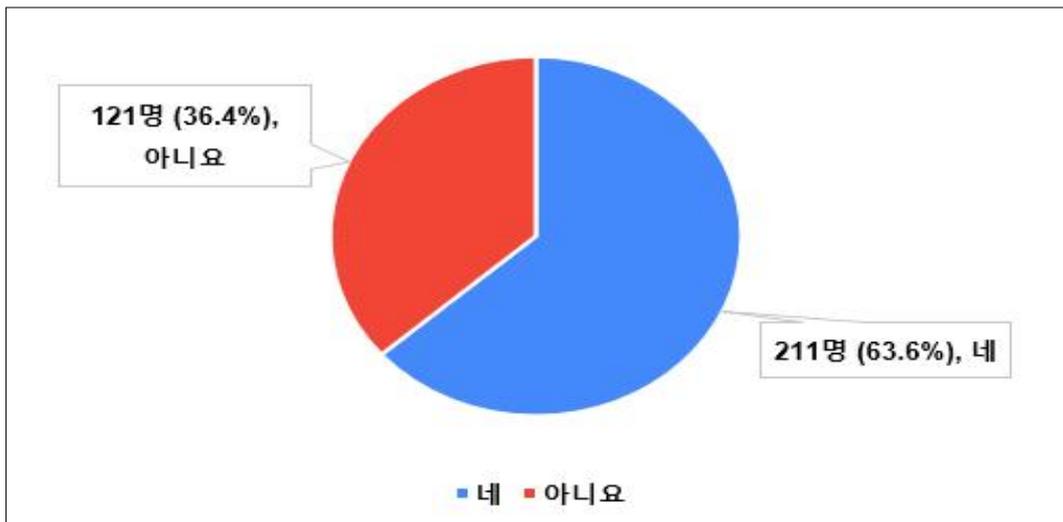
■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시간이 근로시간면제(Time off, 타임 오프)로 인정받는 시간에 포함됩니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타임오프’에 관해 분석한 결과, 211명(63.6%)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시간이 근로시간면제로 인정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타임오프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명)	백분율(%)
네	211	63.6
아니요	121	36.4
합 계	332	100.0



[그림 IV-1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타임오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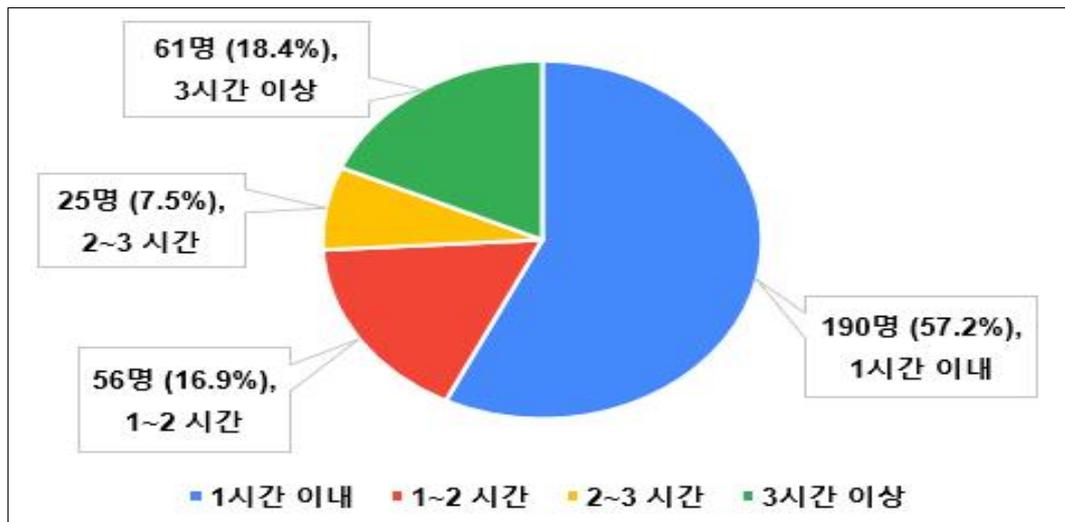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사업장 내 안전보건활동에 1주일에 몇 시간 정도 투입하십니까?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한 질의에 “1주일에 1시간 이내”로 응답한 경우가 190명(57.2%)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2시간” 56명(16.9%), “3시간 이상” 61명(18.4%), “2~3시간” 25명(7.5%)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3〉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 내 안전보건활동 시간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명)	백분율(%)
1시간 이내	190	57.2
1~2 시간	56	16.9
2~3 시간	25	7.5
3시간 이상	61	18.4
합 계	332	100.0



[그림 IV-12]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 내 안전보건활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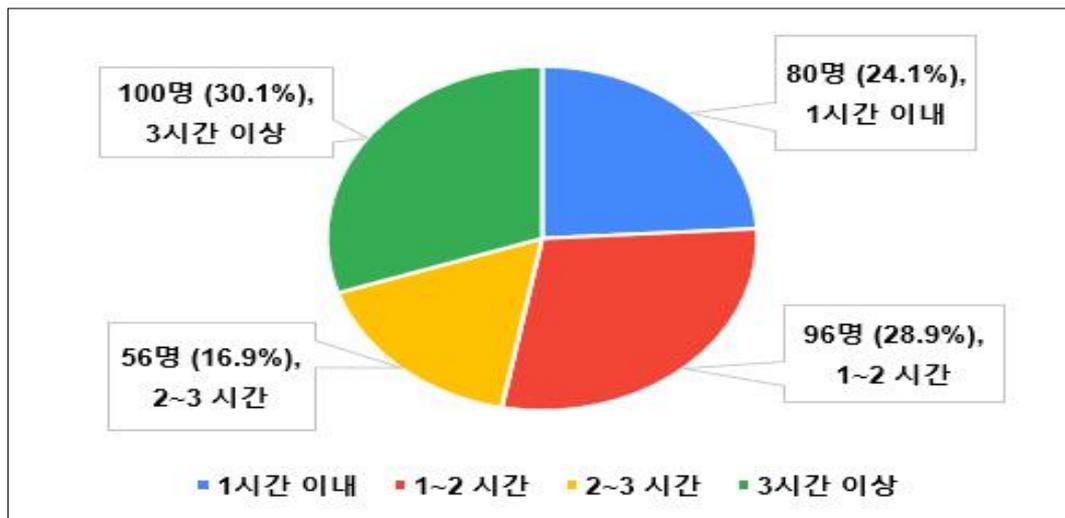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사업장 내 안전보건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1주일에 얼마나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내 안전보건활동 시간이 1주일에 몇 시간이 적정한가’에 관하여, 응답자 총 332명 중에 “3시간 이상”이 적정하다 100명(30.1%)과 “1~2시간”이 적정하다 96명(28.9%)이 응답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실제 활동시간으로는 안전보건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1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투입이 필요한 안전보건활동의 적정 시간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명)	백분율(%)
1시간 이내	80	24.1
1~2 시간	96	28.9
2~3 시간	56	16.9
3시간 이상	100	30.1
합 계	332	100.0



[그림 IV-1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투입이 필요한 안전보건활동의 적정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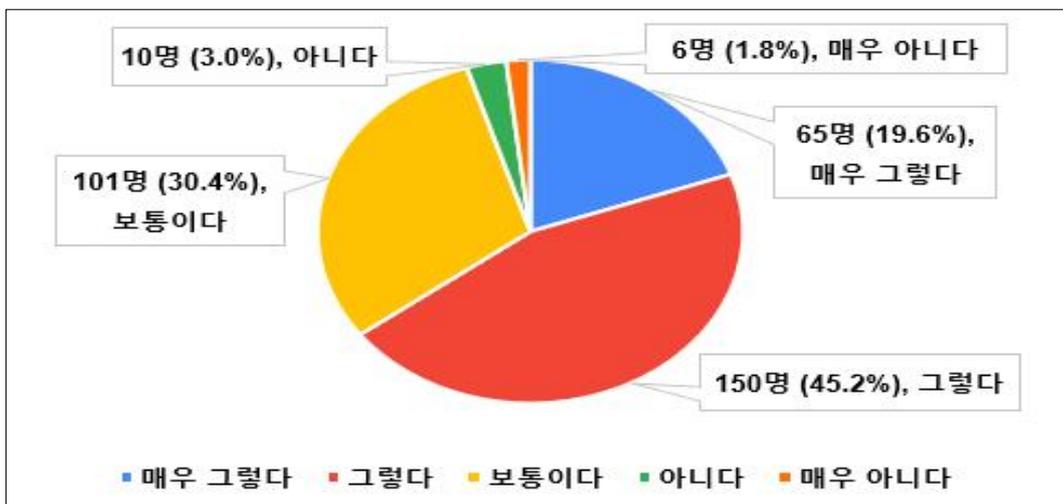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안전보건활동으로 사업장의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총 332명 중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안전보건활동으로 사업장의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매우 그렇다” 65명(19.6%)과 “그렇다” 150명(45.2%)의 긍정적인 응답이 ”아니다“ 10명(3.0%), ”매우 아니다“ 6명(1.8%)의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안전보건활동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안전보건활동으로 사업장의 환경 개선 여부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명)	백분율(%)
매우 그렇다	65	19.6
그렇다	150	45.2
보통이다	101	30.4
아니다	10	3.0
매우 아니다	6	1.8
합 계	332	100.0



[그림 IV-1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안전보건활동으로 사업장의 환경 개선 여부

■ 귀하의 사업장 내에 따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이 있으십니까?

사업주 및 관리자 총 332명 중 사업장에서 ‘사업장 내에 따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있음” 145명(43.7%), “없다” 105명(31.6%)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내부 규정이 있는 사업장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모름” 82명(24.7%)으로 응답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있었다.

〈표 IV-16〉 사업장 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 유무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명)	백분율(%)
있다	145	43.7
없다	105	31.6
모름	82	24.7
합 계	332	100.0



[그림 IV-15] 사업장 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 유무

■ 귀하의 사업장 내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다음의 업무의 발생 빈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발생 빈도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10가지 업무에 관해 업무의 발생 빈도를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다.

첫째, 3가지 업무, 즉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104명, 31.3%),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138명, 41.6%),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134명, 40.4%)의 업무가 분기별 1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1가지 업무, 즉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에의 신고”(121명, 36.4%)에 관한 업무가 1년에 1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106명, 31.9%)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118명, 35.5%)의 활동은 수시로 발생한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에 관한 활동 업무는 유사한 수치를 보여 빈도에 따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IV-1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의 발생 빈도

(단위: 명, %)

구분	수시로 발생	1주에 1회 정도	1달에 1회 정도	분기별 1회 정도	1년에 1회 정도	합계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73 (22.0)	38 (11.5)	95 (28.6)	97 (29.2)	29 (8.7)	332 (100.0)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55 (16.6)	13 (3.9)	67 (20.2)	104 (31.3)	93 (28.0)	332 (100.0)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66 (19.9)	15 (4.5)	67 (20.2)	138 (41.6)	46 (13.8)	332 (100.0)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106 (31.9)	29 (8.7)	54 (16.3)	108 (32.5)	35 (10.6)	332 (100.0)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에의 신고	73 (22.0)	15 (4.5)	38 (11.5)	85 (25.6)	121 (36.4)	332 (100.0)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107 (32.2)	13 (3.9)	23 (6.9)	70 (21.1)	119 (35.9)	332 (100.0)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59 (17.8)	14 (4.2)	40 (12.0)	134 (40.4)	85 (25.6)	332 (100.0)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80 (24.1)	19 (5.7)	38 (11.5)	94 (28.3)	101 (30.4)	332 (100.0)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118 (35.5)	29 (8.7)	65 (19.6)	79 (23.8)	41 (12.4)	332 (100.0)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91 (27.4)	36 (10.8)	69 (20.8)	90 (27.1)	46 (13.9)	332 (100.0)

■ 귀하의 사업장 내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다음의 업무의 참여 수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 수준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10가지에 관하여 업무에 대한 참여수준을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다.

첫째, 발생시마다 참여 또는 대부분 참여한다고 응답하여 업무의 참여도가 높은 항목으로는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251명, 75.6%),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242명, 72.9%),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240명, 72.3%)로 70% 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참여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난 활동은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에의 신고”에 관한 업무로 참여도가 낮은 것(105명, 31.6%)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감독기관에 신고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IV-1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의 참여 수준

(단위: 명, %)

구분	발생 시마다 참여	대부분 참여	가끔 참여	참여하지 않음	합계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103 (31.0)	148 (44.6)	57 (17.2)	24 (7.2)	332 (100.0)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83 (25.0)	113 (34.0)	72 (21.7)	64 (19.3)	332 (100.0)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89 (26.8)	128 (38.6)	78 (23.5)	37 (11.1)	332 (100.0)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124 (37.4)	118 (35.5)	62 (18.7)	28 (8.4)	332 (100.0)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에의 신고	90 (27.1)	82 (24.7)	55 (16.6)	105 (31.6)	332 (100.0)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130 (39.1)	76 (22.9)	69 (20.8)	57 (17.2)	332 (100.0)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105 (31.6)	105 (31.6)	83 (25.0)	39 (11.8)	332 (100.0)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109 (32.8)	100 (30.1)	66 (19.9)	57 (17.2)	332 (100.0)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119 (35.8)	121 (36.5)	55 (16.6)	37 (11.1)	332 (100.0)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9 (32.8)	120 (36.1)	68 (20.5)	35 (10.6)	332 (100.0)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활동별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중요도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10가지 업무에 관해 업무의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10가지 업무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업무의 응답을 60% 이상인 것을 살펴보면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208명, 62.7%),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206명, 62.0%),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61.8%), “사업장 자체 점검 참여”(205명, 60.9%)로 나타났다.

또한 <표 IV-18>의 업무참여 수준을 보면, 대부분 업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IV-19> 중요도와 교차하여 비교하여 살펴보면,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사업장 자체 점검 참여” 등이 가장 높게 참여하고 활동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별 중요도

(단위: 명, %)

구분	상	중	하	합계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202 (60.9)	111 (33.4)	19 (5.7)	332 (100.0)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159 (47.9)	126 (37.9)	47 (14.2)	332 (100.0)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179 (53.9)	122 (36.8)	31 (9.3)	332 (100.0)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208 (62.7)	98 (29.5)	26 (7.8)	332 (100.0)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에의 신고	163 (49.1)	107 (32.2)	62 (18.7)	332 (100.0)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206 (62.0)	85 (25.6)	41 (12.4)	332 (100.0)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162 (48.8)	135 (40.7)	35 (10.5)	332 (100.0)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186 (56.0)	113 (34.0)	33 (10.0)	332 (100.0)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205 (61.8)	103 (31.0)	24 (7.2)	332 (100.0)
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92 (57.8)	118 (35.6)	22 (6.6)	332 (100.0)

■ 귀사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 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사업주의 태도 및 협조 부족”, “근로자의 무관심 및 협조 부족”, “다른 업무로 인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시간 부족”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인력 부족”에 대해 4가지 관점으로 질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근로자의 무관심 및 협조 부족”(216명, 65.1%)의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업무로 인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시간 부족”(211명, 63.6%)의 이유로 매우 또는 약간의 문제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제도 개선 시 현재의 활동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V-2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시 어려운 점

(단위: 명, %)

구분	매우 문제가 된다	약간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합계
사업주의 태도 및 협조 부족	52 (15.7)	97 (29.2)	183 (55.1)	332 (100.0)
근로자의 무관심 및 협조 부족	62 (18.7)	154 (46.4)	116 (34.9)	332 (100.0)
다른 업무로 인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시간 부족	87 (26.2)	124 (37.4)	121 (36.4)	332 (100.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인력 부족	56 (16.9)	132 (39.7)	144 (43.4)	332 (100.0)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추가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시 추가로 지원할 요소에 대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 기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시간 보장 및 확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건의 사항에 대한 결과 사내 공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원 확대” 및 “유사지역·업종별 명예감독관 우수 사례 등 정보 공유 기회”의 5가지 관점으로 조사하였다.

질의한 결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 기회”(268명, 80.7%),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시간 보장 및 확대”(263명, 79.2%), “유사지역·업종별 명예감독관 우수 사례 등 정보 공유 기회”(257명, 77.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건의 사항에 대한 결과 사내 공유”(246명, 74.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원 확대”(216명, 65.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제도 개선 시 현재의 활동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V-2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단위: 명, %)

구분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현재로 충분하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합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 기회	152 (45.8)	116 (34.9)	60 (18.1)	4 (1.2)	332 (100.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시간 보장 및 확대	175 (52.7)	88 (26.5)	64 (19.3)	5 (1.5)	332 (100.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건의 사항에 대한 결과 사내 공유	149 (44.9)	97 (29.2)	82 (24.7)	4 (1.2)	332 (100.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원 확대	96 (28.9)	120 (36.2)	103 (31.0)	13 (3.9)	332 (100.0)
유사지역·업종별 명예감독관 우수 사례 등 정보 공유 기회	143 (43.1)	114 (34.3)	66 (19.9)	9 (2.7)	332 (100.0)

3) 설문조사 소결

전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분석하였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제조업 222명(66.8%), 서비스업 47명(14.2%), 기타업종 47명(14.2%), 건설업 16명(4.8%)으로 제조업(222명, 66.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규모별(상시근로자수)로 살펴본 결과, 100~299인 128명(38.5%), 300~999인 89명(26.8%)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153명(46.1%), 40대 128명(38.6%)으로 조사되어 50대와 40대가 281명(84.6%)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속기간으로는 “15년 이상”이 223명(6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된 응답자의 직위는 노조원 52명(15.7%), 노조간부 167명(50.3%), 일반근로자 113명(34.0%)으로 나타났으며 “노조간부” 167명(50.3%)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된 기간에 관해 “2년 이내” 153명(46.1%), “2~4년 이내” 73명(22.0%), “8년 초과” 45명(13.6%), “4~6년 이내” 40명(12.0%), “6~8년 이내” 21명(6.3%)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장 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1명만 위촉(282명, 85.0%)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인원의 바람직한 기준’에 대해 질의에 관해 “사업장의 공정 종류와 특성에 따라” (123명, 37.1%), “근로자의 수에 따라”(112명, 33.7%)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안전보건활동에 활동하는 시간에 대한 질의’에 관해 “1주일에 1시간 이내”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90명(57.2%)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시간 이상” 61명(18.4%), “1~2

시간” 56명(16.9%), “2~3시간” 25명(7.5%)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의 사업장 내 안전보건활동이 1주일에 몇 시간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3시간 이상”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100명(30.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안전보건활동으로 사업장의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의에 긍정적인 응답이 215명(64.8%)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장 내에 따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질의에 “있음” 145명(43.7%), “없다” 105명(31.6%), “모름” 82명(24.7%)으로 응답하였으며,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이 있는지 모르거나 없는 경우가 187명(56.3%)으로 더 많이 차지하였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실시하는 업무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118명, 35.5%),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107명, 32.2%),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106명, 31.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91명, 27.4%)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수준이 높은 업무로는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251명, 75.6%),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242명, 72.9%),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240명, 72.3%)로 나타났다.

활동의 중요도는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208명, 62.7%),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206명, 62.0%),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205명, 61.8%),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202명, 60.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활동 시 어려운 점으로는 “근로자의 무관심 및 협조 부족”(216명, 65.1%), “다른 업무로 인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시간 부족”(211명, 63.6%)의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현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제도에 관해 위촉 기준 및 활동시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터뷰조사

1) 인터뷰 조사 개요

- 인터뷰 방식 : 현장 방문조사
- 인터뷰 대상 : 총 18명
 - (1) 규모별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4명
 - (2) 전문가 회의
 - 관계자 2명 (경총 관계자 1명, 노총 관계자 1명)
 - 관리자 2명 (대기업 관리자 1명, 중소기업 관리자 1명)
- 인터뷰 조사 기간 : 2023년 9월 4일 ~ 11월 2일

〈표 IV-2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터뷰조사 대상 및 수

(단위 : 명)

인터뷰 조사 대상	업종	상시근로자수/공사금액별	인터뷰 조사 수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제조업	100인 미만 사업장	1
		100-299인 사업장	4
		300-999인 사업장	1
		1,000인 이상 사업장	1
	서비스업	100-299인 사업장	1
		300-999인 사업장	1
		1,000인 이상 사업장	1
	공공기관, 공기업	300-999인 사업장	1
		1,000인 이상 사업장	2
	건설업	1,000억원 이상	1
총계			14

〈표 IV-23〉 전문가 회의 대상 및 수

(단위 : 명)

인터뷰 조사 대상		인터뷰 조사 수
관계자	경총 관계자	1
	노총 관계자	1
관리자	대기업 관리자	1
	중소기업 관리자	1
총계		4

- 인터뷰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V-24〉 인터뷰조사 내용

내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내부 규정 여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필요성 (위촉, 활동시간, 업무 범위 등의 법제화 등)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방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장애요인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으로 인한 산업재해감소의 효과성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사업장 및 정부의 지원 사항

2) 인터뷰 조사 결과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내용

가) 제조업

(가) 100인 미만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터뷰 질문	1) 제조업, 근로자수 89명, 비노조원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내부규정이 있는지?, 내부규정을 둔다면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규정속에 관련 규정이 없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안전관리규정,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내부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은 안전 업무 중 수행하므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사업장에서 지원하는 경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원이 아닌 경우이므로 활동시간에 대하여 자유로운 활동시간이 필요하다. - 대부분 안전업무도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도 하므로 중복이 되지만 그래도 회사구성원이므로 권한 없이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적인 활동시간이 있어야 한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노조가 없는 곳이므로 회사 내에서 지정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하고 있다. - 그러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좋다.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히 도움이 된다. (활동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인터뷰 질문	1) 제조업, 근로자수 89명, 비노조원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 보장과 활동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 1주일에 최소 2시간정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특히 근로자 수도 중요하지만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수도 정해야 한다.
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고른다면? (설문지 1-3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자체 점검에 참여 - 근로감독관 감독시의 참여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및 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행하는 업무 시간이 주당 1시간 보다 1일 2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위한 시간 보장도 중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노조가 있는 경우는 노조 외에 일반근로자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 서로 상호보완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교육을 통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필요하다.(위험성평가 교육등) - 협의회 활동을 확대하여 분기별 1회씩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안전정보 정보교환 및 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 같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해보니 근로자수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장 규모나 업무의 공정등을 중심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100-299인 미만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터뷰 질문	2) 제조업, 근로자수 130명, 비노조원	3) 제조업, 근로자수 150명, 노조원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내부규정이 있는지?, 내부규정을 둔다면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규정속에 관련 규정이 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안전관리규정,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내부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은 안전 업무 중 수행하므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안전관리규정,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내부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은 안전업무 중 수행하므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사업장에서 지원하는 경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원이 아닌 경우 회사 내에서 권한이 주어 져야 한다. 대부분 안전관리팀에서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을 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 되기는 하지만, 노조소속이 아니라 회사 직원 입장이므로 권한 없이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적인 권한이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강제조항을 두고 교육나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 정부 평가나 기업 평가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평가하여 가점을 주는 것이 좋다. - 안전환경 업무 중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의무사항으로 두는 것이 좋다. - 회사 내에서 활동보장을 위하여 일정시간을 활동 업무시간으로 두어야 한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노조가 없는 곳이므로 회사 내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시키고 있다. - 안전리더자로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를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중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노조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한다.

	인터뷰 질문	2) 제조업, 근로자수 130명, 비노조원	3) 제조업, 근로자수 150명, 노조원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 도움이 된다. (활동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 도움이 된다.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 제도적 보장과 활동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의 인식 전환과 회사 내부지원, 그리고 정부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효과가 있는지 제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 작업중지 할 경우 작업중지 조치 후 개선방안 사후대책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고른다면? (설문지 1-3 참고)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및 의견 제시	- 자부심을 갖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수행하는 업무 시간이 주당 1시간 보다 1일 2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 회사 내에서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제 혜택, 금전적, 정책적 보장 등을 통한 구체적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신분보장이 필요하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의 보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300인사업장의 기준으로 1일 2시간 사업장을 순회 할 수 있도록 시간적 보장이 필요하다. - 정부에서는 정책적 지원 및 교육이 필요하다. 분기별(1년 4회) 교육과 협의체를 통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 실질적인 활동이 보장되도록 시간을 부여하는

	인터뷰 질문	2) 제조업, 근로자수 130명, 비노조원	3) 제조업, 근로자수 150명, 노조원
			<p>것이 필요하다. 회사 내에서 노조 활동에 따른 불이익이 없지만 비노조원인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회사 내에 제도적 보장. 활동비 지원 등 수당 제공이 필요하다.

	인터뷰 질문	4) 제조업, 근로자수 280명, 노조원	5) 제조업, 근로자수 100여명, 비노조원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내부규정이 있는지?, 내부규정을 둔다면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안전관리규정,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내부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은 안전업무 중 수행하므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내부규정은 따로 없으며, 산업안전보건 협의회에서 회의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과 현장 일을 함께 하고 있다. 현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분리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부규정이 필요하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사업장에서 지원 하는 경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강제조항을 두고 교육나 협의체 활성화를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평가나 기업평가 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평가하여 가점을 주는 것이 좋다. - 안전환경 업무 중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의무사항으로 두는 것이 좋다. - 회사내에서 활동보장을 위하여 일정시간을 업무수행시간을 두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아침 조례 시간에 짧게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과 교육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근로자들에게 제공·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었으면 한다.

	인터뷰 질문	4) 제조업, 근로자수 280명, 노조원	5) 제조업, 근로자수 100여명, 비노조원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현재 노조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한다.	- 현장 사람들 중 경력이 많은 사람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다.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 도움이 된다.	- 안전교육 시간에 사고사례, 위험 요소 확인 등의 활동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효과가 있는지 제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예) 안전조치 개선요구이후 후 개선방안 사후대책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 주어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임무에 대한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교육, 간담회 등)
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고른다면? (설문지 1-3 참고)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현재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결여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및 의견 제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의 보장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300인사업장의 기준으로 1일 2시간 사업장을 순회 할 수 있도록 시간적 보장이 필요하다. - 정부에서는 정책적 지원을 통한 분기별(1년4회)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간담회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을 할 때, 교육이 시간 안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 사이에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간담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

	인터뷰 질문	4) 제조업, 근로자수 280명, 노조원	5) 제조업, 근로자수 100여명, 비노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활동이 보장되도록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회사 내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서 지적·요구된 사항이 안전개선안을 통하여 기업구성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자부심도 있고, 노조에서 쓸데없이 쟁의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음) -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회사 내에 제도적 보장. 활동비 지원 등 수당 제공이 필요하다. 	

(다) 300-999인 미만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터뷰 질문	6) 제조업, 근로자수 300명, 비노조원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내부규정이 있는지?, 내부규정을 둔다면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안전관리규정,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내부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은 안전업무 중 수행하므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사업장에서 지원하는 경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 정부에서는 교육이나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고 회사 내에서는 인식 전환을 위한 행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현재 노조가 없는 곳이므로 회사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한다.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 도움이 된다.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 제도적 보장과 활동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고른다면? (설문지 1-3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및 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부심을 갖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강제성이 필요하다. - 주당 1시간 보다 1일 2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회사 내에서 인식전환 및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고, 활동비 지원 등 금전적인 수당 제공이 있으면 좋겠다.

(라)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터뷰 질문	7) 제조업, 근로자수 4만명, 노조원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내부규정이 있는지?, 내부규정을 둔다면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협 제82조 규정에 들어가 있다. - 노조에서 위촉한다. 그래야 사업장에 재해 예방에 효과적이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사업장에서 지원 하는 경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 : 타임오프 제도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지만 추가적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최소 1주 2시간 보장, 차량, 사내 패트롤카, 유류비 혹은 수당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노조에서 추천이 이루어진다. - 사업장당 1명 보다 근로자 수로 판단하여 최소 공장단위로 1명씩 위촉되어야 한다. (5개공장 그리고 사무직. 최소 6명)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히 도움이 된다.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의 보장이 필요하다.
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고른다면? (설문지 1-3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개선참여(위험성평가 참여) - 지도감독 - 작업중지요청(가장 중요하다)

	인터뷰 질문	7) 제조업, 근로자수 4만명, 노조원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및 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의무적 참석제도가 중요하다. - 근로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관 감독업무를 통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감독 인정하면 사업장에서 위상도 높아지고 보다 적극적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만 수강 할 수 있는 안전보건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재해사망사고사례 교육, 안전문화교육 등)

나) 서비스업

(가) 100-299인 미만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터뷰 질문	8) 도소매업, 근로자 150명, 비노조원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내부규정이 있는지?, 내부규정을 둔다면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 내부규정은 따로 없다. - 만약 규정을 둔다면 사업장에서 자체점검을 통하여 수시로 체크하거나, 분기별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사업장에서 지원 하는 경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 사업장에서의 지원은 없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이 되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라서 참여하고, 회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을 참여 및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노조가 없어 연관되는 해당 팀의 팀장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지정한다.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 도움이 된다. 교육시 참여하고 원활히 교육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변경, 조치 방법 등을 공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 주업무가 아니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이 길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고른다면? (설문지 1-3 참고)	-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및 의견 제시	- 노동부나 공단에서 안전에 대한 공지 사항을 사업장에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안전에 대하여 더욱 잘 주지할 수 있을 것 같다.

(나) 300-999인 미만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터뷰 질문	9) 서비스업, 근로자수 700명, 노조원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내부규정이 있는지?, 내부규정을 둔다면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 단협에 규정되어 있고.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사업장에서 지원 하는 경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보장의 지원이 필요하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현재 노조에서 추천으로 이루어진다.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재해감소에 효과가 있다.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 병원 특성상 부서가 달라서 구체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위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시간적 보장이 필요하다. - 1일 4시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고른다면? (설문지 1-3 참고)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감정노동대상으로 작업중지를 한적이 있다.)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및 의견 제시	-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임금이나 필요한 타임 오프 등의 활동시간 지원 정책도 제도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터뷰 질문	10) 호텔리조트업, 근로자 3,700명, 노조원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내부규정이 있는지?, 내부규정을 둔다면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 공단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월 1회 이상 산업안전담당자와 위험요인 점검하고 분기별 1회 산업안전위원회 개최한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사업장에서 지원하는 경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노조 전임 사무국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자동 임명되었다. 3년에 1번씩 자동 선거하고 연임이 될 수도 있다.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 도움이 된다. 위험 요소나 중대 재해 등 일 처리가 더 빨라졌다.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 겸업을 하고 있다보니 시간은 적절하다고 본다.
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고른다면? (설문지 1-3 참고)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인터뷰 질문	10) 호텔리조트업, 근로자 3,700명, 노조원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및 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비용 및 인력 등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성화 제도가 필요하다. - 지금 법으로는 잘 되어 있으나(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야간근무의 경우 2인 1조 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잘 실천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 - 정부의 제도 지원이 가장 중요하며, 우리 회사의 경우 전직원 마음건강 진단, 힐링캠프, 내부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른 사업장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메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 아직 시행초기여서 메뉴얼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다) 공공기관, 공기업

(가) 300-999인 미만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터뷰 질문	11) 공기업, 근로자수 470명, 노조원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내부규정이 있는지?, 내부규정을 둔다면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내부규정이 없어 산안법 조문에 따라 이행하고 있지만 현재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라 운영이 안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 내부 규정이 없어 현재 개정 작업 중에 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사업장에서 지원하는 경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지원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잘 활동할 수 있는 제도나 지원이 없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추가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고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열심히 하려면 보상체계 등이 있어야 한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위원장 추천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되었다. - 그러나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내용이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다.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이 된다. 화기, 고소작업, 밀폐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고 있다. 직접 현장 현장에 다니기도 하고 못가는 경우는 전화로 확인해서 위험작업에 대해 대응 대책 등을 공지하고, 작업 중 확인하여 안되어 있으면 작업중지 한다.

	인터뷰 질문	11) 공기업, 근로자수 470명, 노조원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을 보장받아야 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공유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되는 사람들은 기본 소양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시 교육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 지역별 협의회는 의무사항이지만, 지청에서 협의회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단 한번도 없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 본인은 노조원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일반 사업장에서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고른다면? (설문지 1-3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및 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업에서의 여건을 만들어주는게 가장 중요하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혜택 제공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적극적인 협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문서(공문)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 본인의 사업장의 경우 내부적으로 명예 안전지킴이를 두고 있다. 1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내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책임감이 높아 질 수 있도록 활동비 지원, 예산 확보,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보상을 제공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인터뷰 질문	11) 공기업, 근로자수 470명, 노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의 수를 한정해 놓았는데 보다 넓게 위촉 수를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예를들어 각각 노조 1명 추천, 사업주 추천)

(나)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터뷰 질문	12) 공공기관, 근로자수 6,000여명,노조원	13) 공공기관, 근로자수 4000명, 비노조원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내부 규정이 있는지?, 내부규정을 둔다면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 단협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안에 있다.	-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산안법에 근거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두었다) - 활동시간의 규정은 없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사업장에서 지원하는 경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 근로시간면제를 받아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 받고 있다.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1일 2시간 정도의 활동시간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본다. - 사업장이 분산되어있어서 사업장 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두어야 효과적이다. 1일 2시간이라고 해도 사업장이 멀리있으면 이동하는데 장시간 소비하여 의미가 없다. 사업장 별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노동조합 추천으로 교육감이 노동부에 위촉하였다.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이러한 지정방식은 법에 나와 있는대로 하였다.	-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추천으로 이루어진다.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 도움이 된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근무 하다 보니 근로자들과의 소통이 수월하다.	- 안전보건예방에 도움이 되고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우선	- 급식소라는 조건이 있어 주로 오후에만 현장 방문을 하고 있는데, 경남도에 1,000개의	- 활동시간 보장이 필요하다.

	인터뷰 질문	12) 공공기관, 근로자수 6,000여명,노조원	13) 공공기관, 근로자수 4000명, 비노조원
	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지?	학교가 있다 보니 혼자서 관리하기 힘들다. - 급식소에 산안법이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 (3-4년 정도) 인지도가 낮다.	
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고른다면? (설문지 1-3 참고)	-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석	-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업중지 - 감독참여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및 의견 제시	- 본인은 단체협약에서 근로면제를 받고 있다.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공장은 그 사업장에는 국한 되어 있다 보니 근로 면제를 받기 어렵다. 하루 정도는 사업장을 돌아볼 수 있도록 활성화가 필요하다. - 지금 현재 혼자서 1,000개의 학교 급식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인력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산업재해현장을 보고 받거나, 직접 가는데 이동시간이 걸려 관리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지역별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1명씩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내부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 사실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에서 해야 할 권한이 거의 없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요일별 혹은 시간별로 지정하여 활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예를들어, 월. 금, 오전 10시~11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비 및 예산이 필요하다(예를들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으로 출장시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활동비용)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책도 있으면 효과적이라고 본다.(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임명 기간 동안 직책) - 업무시간 중 활동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건설업

(가) 1,000억원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터뷰 질문	14) 건설업, 공사금액별 1,000억원, 비노조원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내부규정이 있는지?, 내부규정을 둔다면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 현재 내부규정은 따로 없으며,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매뉴얼을 그대로 규정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사업장에서 지원 하는 경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 지원보다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현장에 관련된 사람들로 선정하였으면 좋겠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현재는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회사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선정되고 있다.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 사전 위험성 평가, 명일 작업회의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 주어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임무에 대한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교육, 간담회 등)
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고른다면? (설문지 1-3 참고)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단, 현재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실현이 가능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함)

	인터뷰 질문	14) 건설업, 공사금액별 1,000억원, 비노조원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및 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으로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규정에 간담회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실시 횟수, 참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없다. - 공문이 있으면 간담회를 갈 수 있으나 공문이 오지 않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2) 전문가 회의 개최

가) 관리자

-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내용

	인터뷰 질문	H그룹	MAT사(상시 근로자수 280명)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내부 규정이 있는지?, 내부규정을 둔다면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내부규정 없음. 다만, 단협 제82조 산재예방을 위하여 조합이 위촉하면 권한과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내부규정을 둔다면 안전관리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울산 공장(4만명), 전주(4천명), 아산(8천명), 연구소(8천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각각 1명이므로 울산공장은 비례적으로 9명 정도 있어야 맞다고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다. (단협에 있다) - 안전관리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사업장에서 지원하는 경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 : 타임오프 제도 - 비노조원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예를 들어 시간 1주 2시간 보장, 지원(차량, 사내 패트롤카, 유류비 혹은 수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 : 타임오프제 - 현재 업무수행에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수당 등의 보완책이 있으면 좋겠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노조에서 추천이 이루어진다. - 직원의 추천이 필요함. 사업장의 안전관리팀에서도 노·사참여라는 측면의 감독관 추천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노조에서 추천이 이루어지며 노조가 아니면 활동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직원의 추천도 필요하다.

	인터뷰 질문	H그룹	MAT사(상시 근로자수 280명)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복수로 두어도 무난하다고 본다.(직위는 주교 자격증, 일정기간 이상 근무자)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 도움이 됨 - 비노조원인 경우도 재해예방에 도움이 된다.	- 도움이 된다.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 노조원 : 타임오프제도 - 비노조원 : 활동시간 보장(산업안전보안관제도를 두는 것이 좋음), 권한 및 수당 등의 지원	- 노조원 : 타임오프제도 - 비노조원 : 활동시간 보장, 권한 및 수당 등의 지원
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고른다면? (설문지 1-3 참고)	- 전통적인 개선참여 - 지도감독 - 작업중지요청	- 전통적인 개선참여 - 지도감독 - 작업중지요청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및 의견 제시	- 자율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비노조원의 참여가 필요하며 감독관의 업무를 인정하여야 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감독 시 감독관업무를 통한 감독 인정, 가산점 등의 혜택이 있으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내부규정(안전관리규정 등)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율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감독의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 지청에서 적극적인 지원(교육제도 등)이 필요함. 예를 들어 안전문화교육이 필요한데 공단 교육원의 안전문화 교육신청이 어렵다. 따라서 지청이나 공단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안전문화 등의 교육의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다. - 안전장비 지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체 1년 4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나) 관계자

- 노총 및 경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내용

	인터뷰 질문	한국노총	경총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내부규정이 있는지?, 내부규정을 둔다면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단체협약에 들어가 있으며, 보다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안전관리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안법에 노력규정이므로 노·사 자율참여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규정보다 더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노·사 자율의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스스로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특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노조 활동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반근로자나 노조원이 참여하여 법의 취지에 맞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사업장에서 지원하는 경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방안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처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지역협의체 등을 통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를 시키고, 기업 내, 지역적, 고용부, 공단 등에서 교육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특히 수당)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방안은 기업이 해야 하지만 정부에서도 지원 방안이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인터뷰 질문	한국노총	경총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노조의 추천이 이루어지는데 보다 명확한 내부 운영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근로자 추천이나 근로자대표 추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되 다양한 지정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노조의 추천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 특히 근로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노조에서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 단위 노조위원장이나 노조 간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노조 활동의 연장이 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 일반 근로자가 원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다. - 본인의 업무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로 인하여 업무가 과중되어 있어 정책적 지원 방안이 있으면 일반 근로자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따라서 추천 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히 도움이 된다. - 조금 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예방 활동이 더 잘되기 위해서 좀 지원방안 및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히 도움이 된다. - 그러나, 현재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방 활동이 좀 더 잘되기 위해서는 지원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시간은 단체협약에서 보장하되, 1주일 1일 정도 적당하지만 최소한 1개월에 2일 정도는 활동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시간을 자율로 두고 지원정책 활성화가 되면 일정 시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해당되는

	인터뷰 질문	한국노총	경총
			<p>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p>
6	<p>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고른다면? (설문지 1-3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모든 활동이 필요하다. - 특히 감독관이라는 명칭을 두었으니 근로감독관이 하는 감독참여와 신고, 작업 중지 요청, 개선요청 등은 매우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활동이 필요하다. 다만 안되는 것을 언급하자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감독관이 하는 감독업무에 노조의 간부도 참여 할 수 있으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는 필요없다고 본다. 2) 감독기관에 신고는 일반근로자일 경우에 신고가 어려우므로 필요 없다고 본다. 노조원의 경우는 노조활동의 일환이므로 신고 할수도 있는것이지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에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
7	<p>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및 의견 제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감독관의 용어 순화가 중요하다는 경총 의견에 대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관이라는 명칭을 안쓰면 효과가 없을 것 같다. - 현재 감독관 외에 다른 좋은 명칭을 찾기가 어렵다. - 굳이 변경하자면 '안전보건문화 활동가', '안전보건보안관' 등이 있지만 이 경우에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본다. ②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감독관이라는 용어를 변경하여 용어의 순화가 필요하다. (예, 노동안전지킴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감독관이 아니라고 명예라는 용어를 쓰고 감독관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회사에서 거부감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킴이, 수행자, 추진자, 담당자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② 정부의 관심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정책과 역량교육 등을 통하여 활성화를 하여야 한다.

	인터뷰 질문	한국노총	경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인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다고 본다.(산업안전보안관) -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규정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 노조와 상관없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의무사항에 관한 제도적 장치, 수당이나 활동시간 보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간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 있어야 가능하다. - 노조 간부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시간으로 활용하지만 비노조원은 활동시간이 없어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비노조원의 참여를 늘리자는 방안이 노사참여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목적에 적절하다고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활동시간의 확보를 해야한다. - 사업장의 근로자 규모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수를 확대 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제출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활성화 되는 곳에는 감독 횟수, 감독의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보다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③ 위촉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일 경우 위촉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추천, 혹은 근로자 스스로 지원 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간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가능하다. - 노조간부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로 활용하지만 비노조원은 활동시간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비노조원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이 노·사참여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목적에 적절하다고 본다)

3) 인터뷰 조사 소결

사업장 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한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안전보건관리규정과 단체협약의 내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사업장의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의 경우,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고, 기업 평가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내역을 평가항목에 가점을 배정하여 기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부분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의 추천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지정된다고 응답하였다.

모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사업장 내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사업장 내 위험요소나 중대재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처리가 더 빨라진다고 응답하였으며, 화기작업, 고소작업, 밀폐작업 등 위험작업은 별도로 관리하며 작업 중 위험요소가 개선되어 있지 않으면 작업중지 명령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에 대한 적절한 활동 시간 보장 및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활동 참여”가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제도(위촉 방법, 활동시간 등)의 보완이 필요하고, 사업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지원으로 활동비 지원 및 수당 등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비용 및 인력 등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시간 보장, 위촉 인원·방법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교육 기회 제공이나 협의회 개최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V.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V.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우수사례 분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통한 기업의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기업 내에서 재해예방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3년간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총 18건의 우수사례가 있으며 대부분 기업의 안전 활동을 통한 개선에 참여 등으로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는 활동의 형식을 살펴본 결과, 안전문화 확산 사례, 작업장 개선사례, 자체점검 참여, 안전활동 참여(위험성평가), 그 외에 안전보건 예방 활동과 개선사례 등으로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안전문화 확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보면 자율활동(사내방송 홍보활동, 안전신문고)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고, 그 결과 현장에서 현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에 관한 해결과 현장의 안전에 관한 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안전문화를 통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재해예방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업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안전보건 의식 고취라는 목표하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재해예방 활동 및 재해감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 예) (S 기업의 안전문화 확산)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제조업으로 전자부품 소재 생산업체로서 15년간 설비기술팀에서 근무 후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임명되었으며 기술 자격증 소지자이고 ESG 전문 활동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사업장의 재해예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안전문화 확산을 주요 목표로 추진하였다.

② 주요활동

○ 안전문화홍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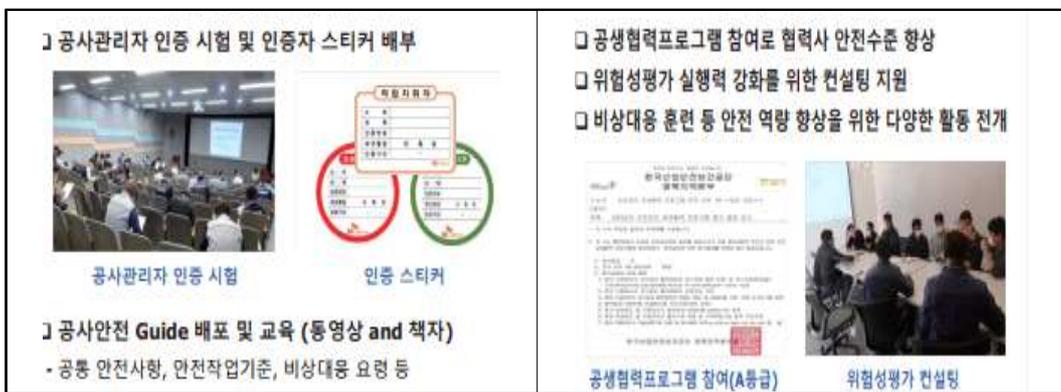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자율활동으로 사내 방송을 통한 안전보건 예방 홍보활동과 안전신문고를 통한 예방 활동을 수행하였다.



○ 안전문화 확산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안전퀴즈 이벤트, 안전 슬로건 공모, 신문고를 통한 안전보건 제안 우수자 공고 및 시상, 사내 홍보 방송을 통한 우수자 홍보 및 시상 등을 제시하였다.

- 협력사를 위한 안전문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공사관리자 인증제도, 공사안전 가이드 배포, 공생프로그램 참여, 협력사 위험성평가 지원, 협력사 뉴스레터 발간 등을 통한 협력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 근로자들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되고자,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위원실, 안전신문고함 등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효과

- 현장에서 잠재적 위험 요소에 관한 해결을 통하여 재해감소에 기여하였고, 협력사의 작업장 안전에 관한 인식 전환에 기여하였다.
- 현장의 안전에 관한 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및 의사 소통을 중심으로 기업 안전 문화의 변화를 통하여 재해감소에 기여하였다.

2) 작업장 개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작업장 사례를 살펴본 결과, 모니터링 업무를 통한 작업 현장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보호구 등의 예방조치, 작업현장 개선을 통한 보행자 도로 개선 등이 이루어져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었다.

특히 작업장개선사례에 적극적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보면, 사내 휴식공간 마련, 업무 효율성 증대, 안전 개선 제안 시스템 개선, 22년 기준 210건 발굴(161건 개선완료)을 통하여 재해감소를 이루었고, 2022년 현재까지 사업장 내 무재해를 달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022년 안전사고 제로 (2018년 4건,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7건)

● 작업장 개선 우수사례 (K 기업의 작업장 개선기여 활동)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 입사경력이 15년 되고 안전보건업무를 10년간 수행하였다.
- 현장에서 안전업무 담당자 또는 근로자와 안전소통 고속도로라는 틀에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전담으로 하여 재해예방 감소에 기여하였다.
- 항목별 매월 2회 이상 점검(2cycle 이상, 총 37건)하고 월 1회 점검 결과 보고 및 공유하여 안전대책의 철저한 이행관리를 하였다.

② 주요활동

○ 모니터링 업무수행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DCS(통제실) 실시간 압력 모니터링 구축을 요청하고, 폭발 방지 시스템 구축 방안 협의 및 참여 하였다. 주요 공정 내

CCTV 설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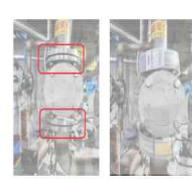
- 현장 특성상 사고발생시 대형 사고가 있을 수 있어 현장의 안전 계획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실시하였다.
- 떨어짐 방지를 위한 고소작업 개선방안 마련과 교육훈련 실시를 통해 재해 감소를 이루었다.
- 현장의 문제점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고 발생 이전에 예방하는 문화를 구축하였다.



○ 작업현장 개선(보호구, 예방조치관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플랜지 밴드 구매를 요청 하였으며 보호구 착용 습관화를 독려하였다. 그리고 A급 화학보호복 부서별 구매 요청, 중화기 구매 및 적용물질 가시관리 제안, 비상대응훈련 시 보호복 착용 훈련을 제안하였으며 근로자 면담 및 편의성을 개선하고 안전보호구를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보호구 매트릭스 재정비 참여 및 범규를 확인하였다. 또한 안전보호구함 사이즈 및 수량 증대 요청, 세안 장치 추가 설치 제안, 안전거울 설치를 제안하였다.
- 재해예방의 기본적인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개인보호구 지급과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 하였다.

- 개인보호구 사용에 관한 안전문화 확산으로 근로자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다.

<p>Filter 설비 개선</p> <p>고온 수지 Filter 교체 작업 시 화상사고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Filter 설비 개선 보호구 착용 홍보 및 이행관리(Double-Check)  <p>고온수지 막힘 수지막힘 해소</p> <p>Filter 설비 개선(좌 개선전 / 우 개선후)</p> <p>주요 위험물질 배관 플렌지 밴드 체결</p> <p>누출 시 작업자 화상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관 누출 시 작업자 화상 위험에 따른 플렌지 밴드 체결  <p>누출 시 막힘 비산 방지</p> <p>플렌지 밴드 체결</p> <p>현장 설비 개선 협의, 플렌지 밴드 구매 요청, 보호구 착용 습관화 촉구</p>	<p>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 예방활동</p>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flex: 1;"> <p>보호복 UPGRAD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기적 착용훈련 실시 A급 화학 보호복 구비  </div> <div style="flex: 1;"> <p>중화기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용 방지 위한 가시관리(적용물질 부착) 매일 점검하여 정상상태 유지  </div> </div> <p>현장 A급 화학보호복 무시별 구매 요청, 중화기 구매 및 적용물질 가시관리 제언, 비상대응훈련 시 보호복 착용 훈련 제언</p>
<p>안전보호구 개선</p> <p>안전보호구 편의성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티포그(김서림 방지) 보안경, 안전모 체결식 보안면 <p>부서별/직업별 적용 보호구 다양하고 복잡함</p> <p>① 근로자가 알기 쉽게 Matrix 재평가 및 표지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별 적용 보호구 명확화(보호구 Matrix) 및 시인성 향상한 안내표지 제작/부착  <p>현장 근로자 면담 및 편의성 개선, 안전보호구 현장 적용, 보호구 매트릭스 재평가 참여 및 보급 확인</p>	<p>안전보호구함, 세안장치, 안전거울 추가설치</p>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flex: 1;"> <p>공용보호구함 사이즈 Up (기존 대비 2배)</p> <p>보호구 수량 Up (기존 대비 1.5배)</p>  </div> <div style="flex: 1;"> <p>세안장치 추가 기존 중별 1개 → 중별 2개</p>  </div> <div style="flex: 1;"> <p>안전거울 설치 각 공정 입구 설치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후 공장 출입)</p>  </div> </div> <p>현장 안전보호구함 사이즈 및 수량 증대 요청, 세안장치 추가 설치 제언, 안전거울 설치 제언</p>

○ 작업현장 개선(보행자 도로개선)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현장 점검 시 위험 구역 확인하고 관련 구역 근로자 면담을 실시하고 계단 설치 및 난간을 추가 설치 요청하였으며 보행자 및 지게차 안전수칙 제정에 참여하고 보행로 이용 홍보 및 지게차 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하였다.
- 작업자 통로 및 보행자 도로의 개선을 통하여 아차 사고를 줄였다.
- 하절기 근무시 환경 순환의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작업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V.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현장 페트를 시 추락 위험 구역 개선</p> <p>육상 플랫폼에 작업 시 전도 및 추락 위험 전도 위험 ① 계단 설치 ② 추락 위험 ③ 추가 난간 설치</p>  <p>현장 작업 시 위험 구역 확인, 관련 구역 근무자 권양, 계단 설치 및 난간 추가 설치 요청</p>	<p>보행자 안전 개선</p> <p>공장 특성상 내부 도로에 화물차량 및 지게차 수시 운행으로 보행자 사고 위험</p> <p>① 보행로 개선 및 안전표지 부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로 확대 및 가시관리 보행자 안전수칙 제정 및 안전표지 부착 지게차 안전수칙 제정 및 안전표지 부착  <p>보행로 개선 표지판 부착 보행자 안전 수칙 지게차 안전 수칙</p> <p>보행자 및 지게차 안전수칙 제정 참여, 보행로 이용 홍보 및 지게차 안전수칙 준수 독려</p>
---	--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효과

- 사내 휴식공간 마련을 통하여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업무 효율성 증대를 이루었다.
- 안전개선 제안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22년 기준 210건 발굴(161건 개선 완료)하여 개선을 통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하였다.
- 사내 무재해달성을 통하여 2022년 현재까지 재해 제로 달성하였다.
- 2022년 안전사고 제로(2018년 4건,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7건)를 목적으로 2022년 사고 제로에 도달 목표를 달성하였다.

3) 자체 점검에 참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중 기업 내에 자체 점검에 참여한 사례를 본 결과, 근로감독관 감독에 참여하거나 자체점검 참여, 작업중지 요청을 통하여 산업재해 발생 감소에 기여 하였으며, 산업재해 zero, 안전사고 zero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전 안전 활동의 참여라는 특징에 따라 안전관리 S등급의 달성하였고, 경영자 리더십 및 근로자 참여라는 측면에서 위험요인을 찾아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감소의 한 축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도급관리강화, 비상대응 체계,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2023년 로드맵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체 점검에 참여우수사례(I 기업의 자체 점검에 참여)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완성을 통하여 협력업체와 협업을 이루기로 하였고, 안전사고 없는 근로 여건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 1,400명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업장 특성상 서비스업이므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산업재해 외에도 일반시민재해까지 예방해야 하는 거대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② 주요활동

○ 근로감독관 감독참여 개선

- 노사간의 산업안전보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감독시 직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 회사의 위험요인발굴과 개선을 위한 작업장 현장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하도록 하였다.

<p>김포공항 위험현장(급유시설) 노(명)예산업안전감독관(사)관리감독자) 안전점검(년 4회)</p> <p>점검목적 내용</p> <p>설 및 추석 연휴를 대비하여 김포공항 급유시설에 대한 노(명)예산업안전감독관(사) 협력적 산재예방활동을 시행하여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휴 전 및 후 안전점검 시행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작업하기서 작성 여부, 점검필요성 내 설비 작동상태, 유증기(배수장치)작업보호조치동 점검등</p> 	<p>근로감독관이 점검하는 김포공항 급유시설 공정안전관리(PSM) 이행실태점검시 참여(6.12)</p> <p>점검목적 내용</p> <p>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김포공항 급유시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및 시설을 관리상대 전반적 점검 참여</p>
--	--

○ 자체 점검 참여 개선

- 위험성 평가 시 참여하였고 근로자 직접 참여라는 목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재해감소에 참여하였다.

<p>점검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점검을 수행하여 노사간 안전보건 격차 해소 ✓ 우리 공항의 주요현장에 대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으로 공사 및 자회사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p>주요 현장에 대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위한 직영현장 안전점검 참여</p> 	<p>점검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점검을 수행하여 노사간 안전보건 격차 해소 ✓ 우리 공항의 주요현장에 대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으로 공사 및 자회사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p>주요 현장에 대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위한 직영현장 안전점검 참여</p> 
---	---

○ 작업중지 요청

- 산업재해 예방계획에 참여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하였다.
- 산업재해 발생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작업

증지를 요청하였다.

- 고소작업시 안전조치 미흡 사례 등 안전모 미착용, 안전대 미착용 등을 중심으로 사고 발생 직전 작업 증지를 요청하여 개선하고 재해를 예방하였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증지 요청

작업증지 실제 사례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사항 기록내용

'23.04.14(금) 회기 및 고소작업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백승덕) 안전 점검사항									
부서	작업장명/사업장명	작업시간	작업목적	작업내용	점검/확인/확인사항	확인 결과	비고	점검 일자	점검 인원
공정팀	유연도 제조	09:00~18:00	유연도 제조	고소작업	1. 작업자 안전모 미착용 2. 안전대 미착용 3. 안전조치 미흡	미흡	작업장 안전모 미착용, 안전대 미착용, 안전조치 미흡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즉시 개선 조치 요청함.	2023.04.14	백승덕

증지사유

- 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미흡 사례는 종종 있지만 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 지도 정도로 끝났음
-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는 3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안전모 미착용, 안전대 미착용, 안전배 미설치 등 여차하면 추락하여 바로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작업책임자 및 작업자 모두가 안전불감증이 최고!
- 추락방지 안전조치 취한 후 작업 재시작 지시

3.0. 밀봉위반 시 사업주에 개인보장 및 감독기관 신고
3.0. 직업성 질환 및 질병근로자 다수 발생시 임시건강진단 요청

발생현황

- 현재 김포공형사업장의 경우 위 3호와 6호의 사례는 발생하지 않음

발생시

- 김포공형사업장의 사업주 및 안전보건담당자의 업무능력과 자세로 판단 하던 대 위 사례는 특별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 만약 위의 사례가 발생시 사업주와 상하관계가 아닌 사업주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로서 명확한 개선 요청, 감독기관 신고 및 임시건강진단 요청 등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임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효과

○ 산업재해 zero 목표, 안전사고 zero 목표 달성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결과를 통하여 산업재해 발생이 감소하였다. 특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통하여 산업재해 zero 목표, 안전사고 zero 목표를 달성하였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주요 핵심과제 7대 과제 이행 계획

명감의 적극 활동('22.1.6-)'에 따른 23년 6월 현재 산업재해 발생 현황(자회사 포함)

소속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6월 현재
직영(김포공형) 사업장	0	0	0	0
위탁(자회사) 사업장	11	9	9	3

23년 6월 직영 : 산업재해 0건
자회사 : 3건으로 전년 대비 큰 폭 감소

직영/위탁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분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인 김포공형사업장의 경우 23년 6월 현재 산업재해 0건으로 노(명예산업안전감독관)사 및 근로자 모두가 함께 현장중심 안전경영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해오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 자회사사업장의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한 김포공형장 이하 안전보건 관계자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자회사의 안전보건 개선지원으로 23년 6월 기준 3건으로 이전 대비 큰 폭의 감소를 보여줌

결과에 대한 소감

- 본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한 명의 노력으로 자회사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감소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었지만 나 한 명의 노력이 보태져 김포공형사업장의 산업재해 ZERO가 유지되고 자회사사업장 및 외부업체의 산업재해가 줄어들어 김포국공형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공평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김포국공형을 이용할 수 있다면 본인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맡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김포국공형장의 안전보건 개선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안전관리 S등급 달성

- 재해감소를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경영자 리더십 및 근로자 참여라는 측면에서 위험요인을 찾아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감소의 한 축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수행하였다.
- 도급관리강화, 비상대응 체계,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2023년 로드맵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예방에 기여하였다.

4) 안전활동 참여(위험성평가 참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기업 내에서 안전 활동에 참여하여 재해예방에 효과를 이룬 사례가 있다. 위험성평가라는 안전 활동에 참여하여 사전위험요인 제거를 통하여 예방 활동을 한 사례이다. 특히 위험성평가를 통한 안전 활동에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홍보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중대 재해사고 건수 70% 감소와 안전 위험 요소 85% 감소를 이루었으며, 위험성평가에서 기업 내에 종사자의 의견 청취를 통한 효율적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실시한 우수사례로 볼 수 있다.

● 기업의 안전활동 참여 우수사례(A 기업의 위험성평가 참여)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 현장직 근로자만이 알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보고, 듣고, 찾아내어 개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 안전부서의 빈 곳을 채우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종사자와 경영층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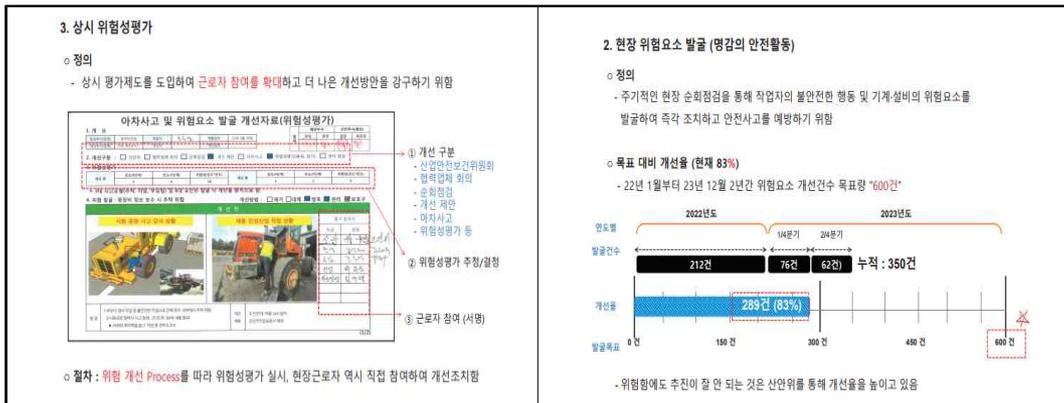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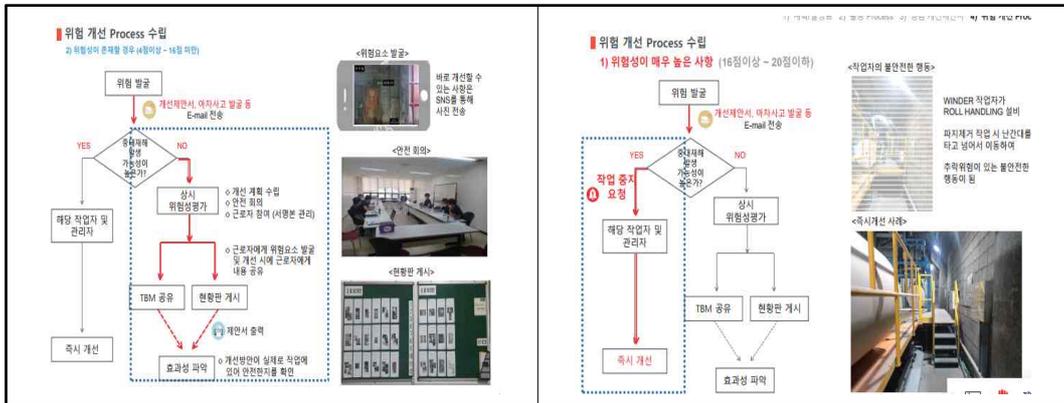
② 주요활동

○ 위험성평가에 참여

- 전사원의 위험성평가의 내용을 공유하고 지표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다.
- 위험성평가 운영시 현장위험 발굴에 참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였다.
- 상시 위험성평가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로 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개선안 제시하였다.

V.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활동 (위험성평가 참여)



4. TBM 활동

- 작업 전 회의를 통해 위험 예지 활동
- 작업 전에 작업자들이 함께 모여 10분 내외로 작업내용과 위험요인을 재 확인함
- 작업자의 건강상태 확인, 공구류, 보호구 등

If it's not safe, don't work !!!

○ TBM 일시 작성

○ 주요 공유내용

- 작업 및 위험내용
- 야작사고 및 안전사고 사례
- 위험성평가 내용
- 안전작업표준서
- Touch & Call

○ 명감 활동을 통한 TBM 문화 정착

- TBM 참여 및 독려
- 기획 지도(근무 고대 시간)
- 종사자 의견 청취
- TBM 활동사례 동영상 제작 배포
- 각 부서 및 협력업체



5. 안전활동물 운영

- 개요 : 1인당 안전활동 건수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안전활동물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
 - 위험요인 개선, 재인증제, TBM활동, 안전회의, 위험성평가, 비상사태 대응 훈련 등 8가지 항목



7. 기타 안전활동

- 노동조합 근로자가 주도하고, 경영진이 참여하는 무재해 추진 및 안전의식 강화



2022년 11월 22일

현장을 방문하여 무재해 추진 결의!

2023년 06월 15일

안전의식 강조행사 최고의 가치 안전!

7. 기타 안전활동

- 안전신포동 운영

(1) 목적

사업장에 출입하는 근로자에게 사고 현황을 알려면서,

- 1) 안전 사고 경각심 고취
- 2) 전 직원이 참여하는 무재해 목표 달성 의지 표명
- (2) 설치장소 : 경비실 앞 출입구
- (3) 설치현황



점등 관리 기준

- 산업 재해 발생 (15일간 점등)
- 경미 사고 발생 (5일간 점등)
- 무 재 해 (상시 점등)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효과

- 위험성평가 참여를 통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효과가 있었다.
- 안전활동 참여를 통하여 홍보하고 위험요소 제거 효과가 발생하였다.
- 중대재해 사고 건수가 70% 감소하였다.
- 안전위험 요소가 85%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효율적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필요한 기구임을 인식시켰다.

5) 안전보건예방 활동 및 개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안전보건 예방 활동과 안전보건 개선을 통하여 재해예방의 우수사례를 한 경우도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적으로 기업 내에서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여 안전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하여 안전과 환경의 사고방지를 위한 사전발굴을 통한 예방조치, 건강 증진 활동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활성화, 안전 의견 수렴 및 해결, 협력사와 상생 협력을 통한 재해예방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우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

● 기업의 안전보건예방 활동 우수사례(L 기업의 안전보건활동)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 사업장 자체 안전진단 참여와 현장 내 위험 요소 제거하고 안전 문화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 노사 합동 5분 멈춤 활동과 현장 관찰 활동을 통한 아차 사고 예방 및 구성원의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하였다.
- 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으로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하고자 노사합동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② 주요활동

○ 안전보건 활동 참여

- 사고사례 수평 전개를 통한 선제적 위험 Point 제거 및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 선제적 건강확보를 위한 독감 예방 접종 및 파상풍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다.

불시안전점검 추진 방안

□ 추진 방안

- 1) 팀의 연원: 공장장, 환경안전팀장, 환경안전팀에 **오메세스안전관리팀**과
- 2) 점검 일정: 불시점검 (서지/동)
- 3) 점검 대상
 - 가. 모든 작업장(가사)에 대한 적상 및 작업에 대한 적정 여부 확인
 - 나. 고위험 작업 (전기, 밀폐, 고소) 안전수칙 확인
 - 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용 점검

→ 대외기간 검사 시 시중 시정사항에 대한 불허 Point

□ 활동 사진

월례안전회의 지원이 불시모니터링 추진 방안

□ 추진 방안

- 1) 불시 모니터링 (중독 포함) → 고위험작업(전기, 밀폐, 고소)에 관해서
- 가. 공장장(생성/공구)환경안전팀(오메세스안전관리팀)과 합동점검 (동/서지)
- 나. 위반사례 관련 환경안전 Point 부처별 시정/시행 등록
- 다. 미준수자 조치: 미준수 횟수에 따른 Penalty 부과

* Penalty는 1년 단위(1~12월)로 12월 기준 (순수)평균을 전년 실적 기준 적용

□ 활동 사진

노사 합동 5분 임종 활동과 현장 관찰활동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구성원의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

노사 합동 5분 임종 활동

□ 추진 활동

□ Leader 현장 관찰활동

□ 이차사고 개선 현황

사발부서	발생건수	연발건수	인명중
일곡읍	17	9	8
가소제	6	4	2
아곡읍	9	4	5
금강제	3	3	0
기타	3	3	0
합계	38	23	15

○ 안전캠페인 참여

- 협력사 대상으로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하고자 노사합동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2023년 1분기 환경안전 캠페인

□ 개요

구분	일	주	장	비고
일	3월 15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주	3월 16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장	3월 17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행	3월 18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동	3월 19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회	3월 20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사	3월 21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회	3월 22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사	3월 23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회	3월 24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사	3월 25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회	3월 26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사	3월 27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회	3월 28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사	3월 29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회	3월 30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 개요

2023년 2분기 환경안전 캠페인

□ 개요

구분	일	주	장	비고
일	4월 15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주	4월 16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장	4월 17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행	4월 18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동	4월 19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회	4월 20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사	4월 21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회	4월 22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사	4월 23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회	4월 24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사	4월 25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회	4월 26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사	4월 27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회	4월 28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사	4월 29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회	4월 30일	환경안전캠페인	장	바라 환경안전캠페인

□ 개요

○ 안전보건 개선 사례

- 밀폐작업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안전사고 예방하고자 하였다.
- 유소견자 건강관리 유지 활동에 기여하고자 대면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하여 실시하도록 캠페인을 하였다.

142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적 개선방안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위촉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32조에 위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시행령 제32조 제1항을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령 제32조제1항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위촉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시행령 제32조 제1항을 보면, 제1호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현재는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내에서 위촉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주의 추천이 없어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연구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실태조사나 인터뷰 결과를 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가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분석되고 있고, 특히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인터뷰나 기업의 안전보건전문가, 노총, 경총 등의 의견에서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재해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이 기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 보다 효과적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업장 규모·위험요인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적정인력 방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근거 규정에 따라 제2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 제3호는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제4호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추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는 목적은 근로자들이 노사 자율로서 기업의 안전 업무를 수행할 때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서 자율적인 재해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재 규정에 따른 위촉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노조의 추천으로 기업 단위별 1명으로 위촉되어 있어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의 활동을 통하여 재해감소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특성과 위험요인에 따른 적정한 인력이 위촉되어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적정인력에 관한 부분을 제안해보기로 한다.

① 근로자수 규모에 따른 위촉(안)

이번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 기업 단위로 1인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뷰 결과에 보더라도 H 기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를 보면, 기업의 공장(사업장) 단위로 위촉되어 있어 (예) 울산(4만명), 전주(4천명), 아산(8천명), 연구소(8천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각각 1명 위촉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근로자가 많은 울산은 비례적으로 9명 정도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사업장 단위로 1명으로 위촉되어 있어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4만명의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와 4천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의 강도나 수행시간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활동 인원을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내 안전관리규정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수나 활동 시간을 두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소속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인원의 바람직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사업장의 공정 종류와 특성에 따라 혹은 근로자의 수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공장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의 추천에 따라,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수에 따라, 근로자수와 면적에 따라, 노사협의체 인원에 따라, 제도에 맞추어 가용인원에 따라, 전국 분산된 지점의 사업장에 따라, 단체협약에 따라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의 의견으로 위촉 인원이 1명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인터뷰 결과를 종합한 결과, 가장 적정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시간은 300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1인이 1주일에 2~3시간 사업장을 순회할 수 있도록 시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인터뷰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1,000인 정도까지는 1인이 적절하다고 보며, 5,000명 이상의 규모의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이나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적정인원의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적정인력 기준은 기업의 자율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

고 안전관리규정등의 내부규정 속에 기업의 특성에 맞는 인력을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상시근로자수를 중심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인원의 예상 기준을 권고한다는 의미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바람직한 위촉 인원을 제안해보기로 한다.

〈표 V-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인원의 예상 기준

(단위: 명, %)

구분	현재	제안(안)	비 고
300인 이하	1명	1명	-
500인 이하	1명	1명	-
1,000인 이하	1명	1명	-
5,000인 이하	1명	1명~5명 이하	사업장개소, 위험요인별
1만명 이하	1명	1명~5명 이하	
1만명 이상	1명	1명~5명 이하	

② 위험요인에 따른 위촉(안)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재해예방에 관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중요하므로 위험요인에 대한 공정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기업에서는 다양한 공정이 이루어지고 위험요인도 다양하므로 넓은 범위의 위험요인보다 재해가 높은 공정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산업재해현황분석자료(고용노동부, 2021년)를 통해 제조업, 전기가스수동업, 운수창고 통신업, 건설업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인물별로 사망재해자를 분석하였다. 기인물별로 보면, 일반동력기계, 건설용기계, 목재가공용기계, 동력크레인, 동력운반기, 운반차량, 압력용기, 용접장치, 화학설비, 건조설비, 로, 요 등, 전기설비, 인력기계용구, 가설건축구조물, 유해, 위험물, 금속재료, 적재물, 산업용 로봇, 산업환경(고온, 산소결핍등)등의 재해가 발생

하였다.

그중에서 일반동력기계, 동력크레인, 운반차량, 동력운반기, 전기설비, 금속재료, 산업환경(고온, 산소결핍등) 등에서 재해자가 많았고, 건설업에서는 가설건축구조물, 건설용기계등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사망재해자가 높게 나타나 이러한 기인물별 작업 공정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두는 것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효과적이며, 재해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주 개선요청과 참여, 작업중지 요청 등이 중요한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인터뷰 결과에서도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의 범위를 살펴본 결과, 위험요인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므로 위험요인이 있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나 장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건설업인 경우에는 사망재해자나 재해율이 높고 사고 발생 위험요인(2021년 사망재해 현황분석, 149명, 가설건축구조물, 건설용기계) 등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건설업은 사업장별로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두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표 V-2〉 업종별 사망자(2021년기준)

(단위: 명, %)

구분	총계					
	총계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기타	건설업
총 계	726 (100.00)	174 (23.97)	2 (0.28)	41 (5.65)	228 (31.4)	281 (38.71)
일반동력기계	44	35	0	0	7	2
건설용기계	26	4	0	1	3	18
목재가공용기계	3	0	0	0	2	1
동력크레인	44	17	0	3	9	15
동력운반기	28	11	0	6	10	1
운반차량	113	12	1	17	42	41
압력용기	6	2	0	1	3	0
용접장치	2	1	0	0	0	1
화학설비	4	4	0	0	0	0
건조설비	1	1	0	0	0	0
로, 요 등	1	1	0	0	0	0
전기설비	13	3	0	0	4	6
인력기계용구	2	0	0	0	0	2
가설건축구조물	207	21	0	0	55	131
유해, 위험물	12	3	0	1	5	3
재료	32	12	0	0	6	14
적재물	3	3	0	0	0	0
산업용 로봇	1	1	0	0	0	0
환경	21	0	0	1	7	13
기타	16	7	1	0	7	1
기인물없음, 분류불능	147	36	0	11	68	32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방식의 다양화

앞서 제시되어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정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업장의 지사나 위험요인이 높은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장 상시근로자 5,000명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인을 두고, 5,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요인이 높거나 지사가 많은 경우에는 위험공정별·지사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가로 위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근거 규정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동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위촉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호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사업장이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회 구성하고 운영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되어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경우, 제2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 제3호는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제4호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추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자료¹⁹⁾를 분석해 본 결과 노조의 비전임이나 평사원에 해당하는 “평조합원” 23.1%(539명)로 일반 근로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태조사인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나 노조원이

19) 고용노동부 제공자료 분석 결과임(2022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현황 분석).

49%로 나타나 노조간부가 아닌 경우에도 상당수가 근로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를 보면 대부분 노조 추천이나 근로자대표의 추천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위촉의 추천 조건이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4호 규정이 적절하다고 보지만, 대부분 근로자 대표자가 추천하거나 노조에서 추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스스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노조의 영향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노조와 관련 없이 위촉되어야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 예방의 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현 시행령 제1항 제1호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사업장에서 스스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하려는 자 또는 사업주가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면 보다 다양한 위촉방식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²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추천방식에 관한 인터뷰 결과를 보더라도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하려고 할 때 위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하거나 혹은 근로자 스스로 지원 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2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추천방식에 관한 인터뷰 결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과 기업관계자, 노총, 경총도 기업내부에서 노조와 상관없이 안전업무를 장기적으로 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업이 추천하거나 혹은 다른 직원의 추천 또는 직원 스스로의 추천방식이 필요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사업장의 안전관리팀에서도 노·사참여라는 측면의 감독관 추천이 필요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에 복수로 두어도 무난하다고 보기 때문에 직위를 주고 자격증, 일정기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추천하고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부규정(안전관리규정등)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방법을 다양화하여 추천 방법을 규정하면 적정인력 확대에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 노조와 상관없이 안전과 보건 업무를 장기적으로 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업이 추천하거나 자격증, 일정 기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추천 또는 다른 직원의 추천과 직원 스스로 추천방식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의 적정(안) 제시

인터뷰 내용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대부분 1주일에 1시간 정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시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당 1시간보다 주당 3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의 중요도를 보면, 적정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인원은 300인 사업장의 기준으로 1주 3시간 이상 사업장을 순회할 수 있도록 시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1주 3시간이 적정한 시간이라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른 근거를 살펴보면 이번 실태조사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1주일에 얼마나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총 332명 중에 “3시간 이상”이 적정하다 100명(30.1%)과 “1~2시간”이 적정하다 96명(28.9%)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실태조사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에서 하는 업무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찾아본 결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208명, 62.7%),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206명, 62.0%),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205명, 61.8%), “사업장 자체 점검 참여”(202명, 60.9%)로 나타났다.

따라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에서 하는 업무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 투입시간을 교차 분석한 결과 1주 3시간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적정 활동시간

(단위: 명, %)

구분	1시간 이내	1~2시간	2~3시간	3시간 이상	합계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33 (16.3)	49 (24.3)	42 (20.8)	78 (38.6)	202 (100.0)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36 (17.3)	58 (27.9)	39 (18.7)	75 (36.1)	208 (100.0)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39 (18.9)	60 (29.1)	32 (15.6)	75 (36.4)	206 (100.0)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41 (20.0)	58 (28.3)	34 (16.6)	72 (35.1)	205 (100.0)

그러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수행 중 사업장에서 중요도가 높은 활동인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3시간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의 투입시간이 1주일에 1시간 이내(190명, 57.2%)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사실상 활동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3시간 이상인 경우(61명, 18.4%)도 있어 1주일에 적정한 시간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를 보면 대부분 1주일 1시간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하기 어려워 시간을 늘리자는 의견이다. 그러

나 일부 노조간부인 경우는 타임오프로 노조업무와 안전업무를 병행하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시간이 노조 활동과 같이 이루어져 1주 1시간이라도 실제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살펴 본 결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기업 내부규정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규정을 들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특히 기업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수행시간에 관한 규정을 두면 노·사자율이란 측면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보장이라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인터뷰 결과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수를 보면 예) 기업 단위로 위촉되어 있어, 울산의 H기업의 상시근로자수는 울산 공장(4만명), 전주(4천명), 아산(8천명), 연구소(8천명)인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단위로 각각 1명 위촉되어 있다. 근로자가 많은 울산공장은 비례적으로 9명 정도 있어야 하지만 현재 사업장 단위로 위촉되어 있어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4만명의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와 4천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의 강도나 수행시간의 어려움으로 활동인원을 근로자수 비례로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내 안전관리규정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수나 활동 시간을 두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현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1조 제1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²¹⁾ 등에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 활동시간 등을 정하도록 지도하여야

21) 경기도 B 공공기관에서 사내 안전관리규정속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다. B 기관의 사내 안전관리규정 제12조를 보면 “제1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시장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재해예방업무 참여를 통한 안전한 작업장 조성을 위해 부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요청하는 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② 명예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의 중지 요청 등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은 명예감독관의 업무수행과 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기관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안전관리체계의 하나로 구성하고 있다.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²²⁾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개정(안)

현 행 운영 규정	검토 될 운영규정(안)	
<p>제11조(사업장지도 등) 제1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 활동시간 등을 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항. 명예감독관이 소속 사업장의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p>	➔	<p>제11조(사업장지도 등) 제1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 활동시간 등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지도. 삭제) 제2항. 동일</p>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교육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 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정보제공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시 어려운 점에 관한 질의에 “근로자의 무관심 및 협조 부족(216명, 65.1%)”의 이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시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근로자가 적극적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이 현장에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재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용방안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20~50인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다고 본다.(산업안전보안관등)

교육을 통하여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고 사업장에 전달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교육 시간을 늘리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 기회”(268명, 80.7%)의 제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까지 코로나 상황 또는 사업장 등의 산업환경요인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교육이 활성화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 등이 연1회 이상 실시할 것으로 보여 협의회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규정 제8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재해예방 활동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으로 추가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법령 교육, 재해예방 교육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1회 이상으로 규정을 두고 있어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업 내부 안전관리규정 등에 교육 시간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지역별·업종별로 사업장의 특성이 다르므로 지역별·업종별로 나누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필요한 내용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정책적 지원방안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 시간이나 추천방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도적 보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목적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구체적인 기업 내에서의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정책적 지원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정부의 지원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위상 확보와 자료 활용방안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재해예방에 직결되고 활동 내용 등이 근로자의 재해에 도움이 되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자료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재해예방 활동자료를 고용노동부의 지청에서 산업안전 관련 근로 감독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사업장내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근로감독관 자료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내에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작업중지 이후 개선방안 사후 대책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근로감독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²³⁾

이외에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의 디자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각 회사의 사원증과 연동하여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개발을 허용하여 사용할 수

2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업무가 자율안전점검의 일환이므로 차후 감독시에 가산점 부여 방안도 필요하다.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²⁴⁾

(2)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이번 실태조사에서 인터뷰를 한 결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한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0조에 반기에 1회 정기회를 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1년 2회의 정기회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제시와 정보제공의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반기 1회 정기회의 개최를 분기별로 하는 방안을 통하여 정부에서는 정책적 지원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중앙부처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를 지도·권고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에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 의무규정이 있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회 활성화에 참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재해예방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예방대책도 중요한 내용이므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OO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2조 제5호에 근로안전지킴이 제도를 두고²⁵⁾ 동 조례 제9조에 근로안전지킴이 운영시 시장이 위촉하는 대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등도 포함하

2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의 디자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은 종이(보존용지) P.V.C(투명한 것)로 포장 되어있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의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디자인을 개선한다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5) OO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2조 제5호 “근로안전지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 -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하여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3) 안전보건교육 기회의 확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기업 내에서 안전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보다는 해당 기업에 필요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교육 내용에서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의 교육과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안전보건 활동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우선적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확대 및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안전 문화 등 교육지원을 통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질 향상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서 개설되어있는 안전문화 교육은 횟수와 인원 한정되어 있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교육과정 등의 개설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휴먼에러, 안전문화 등을 독려하여 재해예방과 안전 인식 전환을 시킬 수 있다고 본다.²⁶⁾

둘째,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위험성평가를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소규모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을 통하여 위험성평가를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2023년 로드맵에 위험성평가시에 근로자 참여를 우선으로 하여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근로자 참여도 중요하지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안전 활동을 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가 이루어지면 위험성평가의

26) 인터뷰 결과를 보면, 안전문화교육이 필요한데 공단 교육원의 안전문화 교육신청이 어렵다. 따라서 지청이나 공단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안전문화 등의 교육의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과가 효과적이라고 본다.

우수사례 속에서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험성평가에 참여하여 효과적인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무재해를 달성한 사례도 있어 위험성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에게 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담당자양성과정 교육을 이수시키고 위험성평가 담당자양성과정을 이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위험성평가지 참여하도록 하면 위험성평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 위험성평가의 효과를 위해서는 근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면 현재 근로자 참여라는 측면과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실시라는 두가지 측면을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이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이수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도 실시 할 수 있고 위험성평가지 효과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성화를 위한 소통방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지역적 특성과 사업장의 업종별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화학공장별 소통방안, 제조업별 소통방안, 서비스업종별 소통방안은 각각 다르므로 업종에 고유한 소통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별 유사지역·업종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우수사례 등, 사망사고, 재해사례 공유 등을 하기 위한 정보 공유의 기회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록 등 제출 서류에 개인휴대폰 번호 기입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삽입하여 추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신속한 정보전달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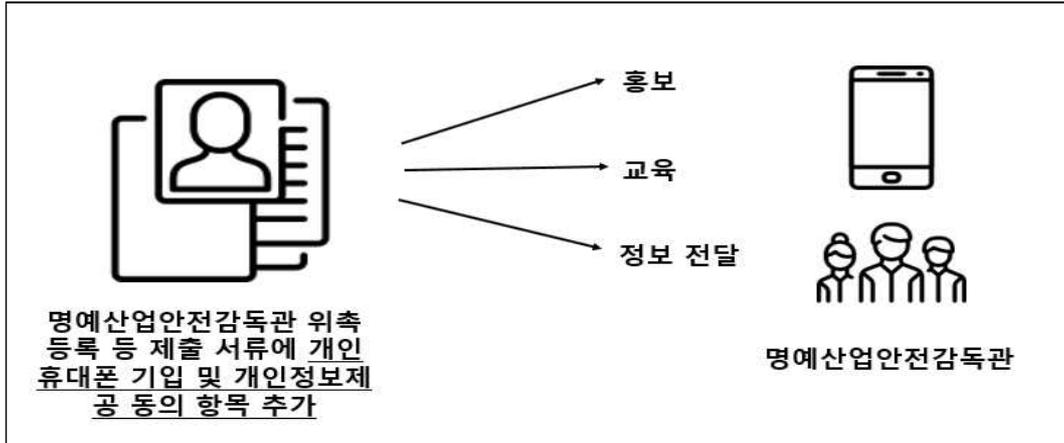
특히 법령의 개정사항, 혹은 추가사항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림 V-1] 장기적인 방안의 홍보 활성화 방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록 등 제출 서류에 개인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삽입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사항 및 법령 정보 전달, 안전보건 사례에 관한 정보전달, 협의회 결과에 따른 정보전달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혜택 제공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신속한 홍보와 정보전달을 통하여 협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문서(공문)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V-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정보 전달 체계

2) 사업주의 지원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지원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회사 내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상을 높이고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활동비에 관한 세제 혜택, 금전적, 정책적 보장 등을 통한 구체적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신분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노사 자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양한 혜택이 필요한 의견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회사 내에 제도적 보장, 활동비 지원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비노조원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과 동시에 활동 시간의 보장(1주 2시간 보장)과 사내 순찰을 위한 지원(차량, 사내 패트롤카, 유류비 혹은 수당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2조제1항의 수당 지급 규정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 내부에서 지급하는 경비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인 지도·권고 등을 통하여 경비수당 등에 대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고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상 확보

인터뷰 조사 결과 사업장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 직원 마음 건강 진단, 힐링캠프, 내부 상담실 등을 운영 등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에게 프로그램에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는 기업 내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TBM 시간이나 아침 조회 시간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예방업무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보다 효과적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3) 위험성평가의 적극적 참여 독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우수사례 속에 위험성평가 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 로드맵에 따라 기업의 위험성평가를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 참여라는 측면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면 위험성평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 최근 우수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재해예방을 통한 무재해를 이루고 있다고 발표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험성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부나 사업주의 독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VI. 결 론



VI. 결 론

이번 연구결과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장 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한 내부규정에 대하여 대부분 모르고 있었으며, 노조집행부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대한 보상 및 혜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에 대한 요구를 보면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고, 기업 평가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내역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가점을 부여하여 기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의 질문에 노사, 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모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사업장 내 위험 요소나 중대 재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처리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화기 작업, 고소작업, 밀폐작업 등 위험작업은 별도로 관리하며 작업 중 위험 요소가 개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작업 중지 명령을 요청하고 있다는 응답 결과도 있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안 및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에서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장 및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시간의 확대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실태 조사에서 상당수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시간이 1주일에 1시간 이내 190명(57.2%)인 것으로 조사되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 거의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3시간 이상인 경우도 61명(18.4%) 정도 되어 1주일 적절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인터뷰 결과를 보면 대부분 1주일 1시간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가 어려워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를 선택한 결과를 보면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1주당 1시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으로는 재해예방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수행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되고 있다.

둘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적정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인터뷰나 실태조사에서 나온 제도적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적정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적정인력에 관한 인터뷰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수의 질문에 근로자 수는 울산 공장(4만명), 전주(4천명), 아산(8천명), 연구소(8천명)인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단위로 위촉되어 있어 각 사업장에 각각 1명이므로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근로

자가 많은 울산공장의 경우 비례적으로 9명 정도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적정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적정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시행령 제32조 제1항을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2조제1항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위촉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 적정인력 확보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노조의 비전임이나 평사원에 해당하는 “평조합원” 23.1%(539명)로 일반 근로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태조사인 경우에도 일반근로자나 노조원이 165명(49.7%)로 나타나 노조간부가 아닌 경우에도 상당수의 근로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조간부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촉 방식을 다양화하면 적정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업무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비노조원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과 동시에 사업장에서 활동시간의 보장(1주 2시간 보장)과 사내 순찰을 위한 지원(차량, 사내 패트롤카, 유류비 혹은 수당 등)이 필요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비용 및 인력 등의 지원은 어려워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기업내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상 확보를 위하여 TBM 시간이나

아침 조회 시간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예방업무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보다 효과적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정보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넷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안전 문화 교육,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 등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교육이 필요하나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워 정부나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수강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²⁸⁾

끝으로 추가한다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규정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규정을 둘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기업 내의 안전관리 규정 등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수행시간 및 적정인력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면 노사자율이란 측면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보장이라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이 짧다는 제한점이 있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현황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개선방안은 충분하지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외제도 비교연구를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8) 온라인 교육 혹은 집체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가 과정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개설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증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89호), 2023.
- 안전보건공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기초소양 및 전문역량강화교육교재, 2021.
- 윤조덕 외 1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7.
- 이정열 외 2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조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 박태순, 「제도 도입 10년을 맞이한 지역협의회 운영실태와 그 개선방안」.『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자료집)』. 국회의원 김영주·제종길, 주관: 명예감독관지역협의회(안산, 안양, 광주, 대전, 청주, 포항), 2005.
- 최수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개선과 노동운동의 정책과제」.『노동조합 주도의 산재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정책 토론회(자료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2.
- 정흥준 외 4,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2.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이상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

15963호), 2015년 10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2018.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2019.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202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2021.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2022.



Abstract

Analysis of The Current System and Best Practices of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Objectives

According to the 2023 roadmap, active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t workplaces have become important in order to promote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necessary for labor–management participation. Rather than the passive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through government guidance and supervision, the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system, which can discover and improve risk fa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workers, has emerged as a way to improve safety culture in the workpla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on the competencies and duties of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as a means to establish a self–discipline prevention system in the workplac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best practices of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in order to identify the field operability of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and to prepare guidelines for the performance of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Method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role of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can be activated in the future by identifying the problems of the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system and improving the operation status of the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system (activity time, number of appropriate personnel, etc.), and policy support measures.

-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Appointment Status
-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Current Accident Status
-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Survey
-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Interview
-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Best Practices Analysis

Results

-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Appointment Statu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September 2023 data, the total number of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at all workplaces was 2,329 people, of which 8.84% (206 people) were full-time workers and 91.16% (2,123 people) were non-full-time

workers. Looking at the distribution of non-full-time workers by position, 41.7% (972 people) of “Employees excluding managers or higher” were the highest, followed by 23.1% (539 people) of “Rank-and-file union members,” 17.3% (403 people) of “Executive employees above the manager level,” and 8.97% (209 people) of “Chief and executive officers of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by region, Busan Region Office has the largest number with 25.2% (588 people), followed by Central Region Office with 22.2% (516 people), Daejeon Region Office with 18.6% (434 people), Gwangju Region Office with 13.1% (306 people), Daegu Region Office with 12.3% (287 people), and Seoul Region Office with 8.5% (198 people).

○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Current Accident Status

Based on Article 32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e look at the entire workplace, the workplace subject to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appointment, and the workplace with appointed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according to the standards by industry and size to form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accidents at all workplaces and workplaces where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are appointed, the accident rate at the workplace where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are appointed (0.84%) as of 2022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the entire workplace (0.65%), but the accident rate seems to be high because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appointed workplace is small. In addition, as a result of examining by industry, it can be seen that the accident rate at the workplace where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are appointe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other types of industries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the entire workplace.

○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Survey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332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were surveyed and analyzed using Google Forms among 341 respondents from September 14 to November 16, 2023.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there are 222 people (66.8%)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47 people (14.2%) in the service industry, 47 people (14.2%) in other industries, and 16 people (4.8%) in construction industries. The majority of inspectors ar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222 people, 66.8%), with 128 people (38.5%) working at companies employing 100 to 299 workers and 89 people (26.8%) working at companies employing 300 to 999 workers.

According to the subjects' age, 153 people in their 50s (46.1%) and 128 people in their 40s (38.6%) were surveyed, showing that those in their 50s and 40s accounted as the majority with 281 people (84.6%). Looking at the subjects' working period, the majority of 223 people (67.2%) had been working for "15 years or more."

The positions of the respondents commissioned as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were 52 union members (15.7%), 167

union officials (50.3%), and 113 general workers (34.0%), making 167 union officials (50.3%) as the majority. Based on the period of appointment of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153 people (46.1%) were appointed for “less than two years,” 73 people (22.0%) were appointed for “two to four years,” 45 people (13.6%) were appointed for “more than eight years,” 40 people (12.0%) were appointed for “four to six years,” and 21 people (6.3%) were appointed for “six to eight years.”

According to the number of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appointed in the workplace, most workplaces appointed only one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282 people, 85.0%).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it is desirable to appoint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according to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workplace” (123 people, 37.1%) and “according to the number of workers” (112 people, 33.7%).

As an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in the workplace, 190 people (57.2%) responded that they participated in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for “less than an hour a week,” and 100 people (30.1%) responded that “more than three hours” was appropriate for the amount of hours of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in the workplace of the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A total of 215 people (64.8%) responded positively to ‘Do you think the environment of your workplace has improved due to the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of the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Regarding ‘Do you have any regulations related to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in your workplace?', 145 people (43.7%) said such regulations exist and 187 people (56.3%) said they did not know or did not have such regulations.

Among the tasks performed as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the most frequent occurrence was "Guidance on safety rules for workers" (118 people, 35.5%), the highest level of participation was "Participation in self-inspection of the workplace" (251 people, 75.6%), and the highest level of importance of activities was "Request for improvement to the employer if risk factors exist" (208 people, 62.7%).

Additionally, the most difficult part in the activities of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was "Workers' indifference and lack of workers' cooperation" (216 people, 65.1%).

○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Interview

All of the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said that the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system is helpful in preventing occupational accidents in their workplaces. In order to promote the activities of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companies said that they needed authority and compensation system for their activities. In the case of the government, it is pointed out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the activities of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by giving additional points to companies with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activities in their company evaluation.

In addition, companies said that institutional improvement, such as ensuring adequate activity time, training support, and the number of

workers to be appointed, is necessary.

○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Best Practices Analysis

The result of examining the best practices of the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activities over the past three years showed that a total of 18 best practices have been identified. The result of examining the forms of participation of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showed a total of five main categories: cases of spreading safety culture, cases of workplace improvement, cases of self-inspection participation, cases of safety activities participation (risk assessment), and other cases of safety and health prevention activities and improvement. It can be seen that companies participated in accident prevention through active activities.

Conclus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system, it is considered that the effect can be achieved only when appropriate personnel are appoin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of the workplace, and it is necessary to appoint an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for each work process.

Currently, most workplaces have active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activities for about 1 hour a week, but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about 3 hours a week for effective activities.

In order to promote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support

measures are needed so that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can receive necessary training (safety culture training, risk assessment training, etc.) divided by region and industry.

In addition, rapid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share the best practices, fatal accidents, and accidents of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by region and industry. In particular to the stipulated law,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active public relations plan by establishing a network of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so that revisions or additional matters of the law can be effectively communicate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fill in personal mobile phones and insert consent items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in documents submitted, such as registration of appointment of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Key words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 Appointment, Activity Time, Appropriate Personnel, Training

부 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현황 조사

안내의 말씀

인제대학교는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과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현황과 모범 사례 분석」을 위탁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취합된 내용은 현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재해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09월

- 발주기관 :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연구기관 :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조흥학 교수)
- 담 당 자 :
- 전화번호 :
- 메 일 :
- F a x :

I. 대상자 일반현황

1. 귀하는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 ① 네 ② 아니요 -->설문종료

1-2. 귀하의 사업장 내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다음의 업무의 참여 수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 유형	참여 수준			
	발생시 마다 참여	대부분 참여	가끔 참여	참여하지 않음
1)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①	②	③	④
2)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①	②	③	④
3)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①	②	③	④
3)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①	②	③	④
4)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에의 신고	①	②	③	④
5)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①	②	③	④
6)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①	②	③	④
7)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①	②	③	④
8)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①	②	③	④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①	②	③	④

1-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활동별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중요도		
	상	중	하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2)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3)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4)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5)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에의 신고			
6)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7)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8)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9)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10)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추가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항목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현재로 충분하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 기회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시간 보장 및 확대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 사내 공유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원 확대				
5) 유사 지역·업종별 명예감독관 우수사례 등 정보 공유 기회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사업주 또는 고용노동부에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활동 시 어려운 점, 추가로 지원을 원하는 항목 등)

()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진

연구기관 :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조흥학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연구원 : 박민수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연구원 : 김태구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설문보조원 : 노현정 (석사과정,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연구상대역 : 김부관 (부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구기간

2023. 08. 16. ~ 2023. 11. 30.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23년도 위탁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현황과 모범사례 분석

(2023-산업안전보건연구원-736)

발행일 : 2023년 11월 30일

발행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김은아

연구책임자 :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조흥학

발행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소 :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전화 : 052-703-0821

팩스 : 052-703-0332

Homepage : <http://oshri.kosha.or.kr>

I S B N : 9791193642207(93300)

공공안심글꼴 : 무료글꼴, 한국출판인회의, Kopub바탕체/돋움체